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62호 2020. 4. 28.(화)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69호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1
 남해군 규칙 제1170호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4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34호 남해군 보안업무규정 폐지규정 13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4
 남해군 고시 제2020-65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15
 남해군 고시 제2020-66호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7
 남해군 고시 제2020-72호 남해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43
 남해군 고시 제2020-73호 남해 군관리계획(장사시설 : 자연장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52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536호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4
 남해군 공고 제2020-538호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59
 남해군 공고 제2020-544호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2
 남해군 공고 제2020-545호 「이동면 초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 분묘개장 공고(1차) · 76
 남해군 공고 제2020-547호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77
 남해군 공고 제2020-55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82
 남해군 공고 제2020-563호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83
 남해군 공고 제2020-564호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95
 남해군 공고 제2020-565호 화계 전원마을 분양 공고 99
 남해군 공고 제2020-591호 「염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분묘개장 공고(1차) 101
 남해군 공고 제2020-595호 남해군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102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6, 행정 3046)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69호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4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로, “대하여” 를 “대한” 으로, “정함으로써” 를 “정하여” 로, “보호하는데 기여함” 을 “보호하는 것”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제3조 중 “신고대상은 [별표 1] 의 규정 위반행위에 한한다” 를 “신고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3조에 따른” 으로, “기타” 를 “그 밖의” 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에 따라” 로, “의하여” 를 “따라” 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4조에 따라” 로, “법 위반행위” 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를 “최초 신고자에게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를 “제1항에도” 로,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의 규정에 의하여” 를 “등에 따라”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익근무자” 를 “사회복무요원” 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지1] 의 기준에 의한다” 를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항에 따른” 으로, “입금하여 지급” 을 “입금” 으로, “한하여” 를 “한정하여” 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을 “제6조에 따른” 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를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 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성명” 을 “성명(남/여)” 로, “성명 또는 업소명” 을 “성명 또는 업소명(남/여)로 한다.

별제 제2호서식의 “성명” 을 “성명(남/여)” 로, “성명 또는 업소명” 을 “성명 또는 업소명(남/여)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	지 급 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하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20만원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자5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목인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법 제9조의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통하게 하거나 이와 같은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행위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악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5만원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5만원

남해군 규칙 제1170호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4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계약의 대행)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5항에 따라 제1관서의 계약업무를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도록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입찰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 반환
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및 5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부과 취소와 감액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서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의회사무과는 남해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물건의 매입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체세공과금,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 ③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을 위임한다.

1. 부군수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 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을 위임할 수 있다.
1. 추정금액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품의에 대한 결재권 위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정한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본청에서 예산집행품의를 할 경우 회계담당부서와의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②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본청에서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 하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남해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임출납원이 사망, 사고 등으로 인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남해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남해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에” 를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로 한다.

② 「남해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 직 명	본 청	지방의회	제1관서
회 계 책 임 관	행정복지국장	-	-
징 수 관	행정복지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분 임 징 수 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과장	-	세입업무담당과장
재 무 관	행정복지국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 임 재 무 관	재무과장, 각 담당관·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담당관·과장(제1관 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 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 비)
총 괄 채 권 관 리 관	행정복지국장	-	-
채 권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부 채 관 리 관	행정복지국장	-	-
부 채 관 리 관	소관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총 괄 기 금 관 리 관	기획예산담당관	-	-
통 합 지 출 관	재무과장	-	-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 팀장	의사업무 팀장	지출업무담당 팀장
수 입 금 출 납 원	세입관리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 팀장	세입업무담당 팀장	세입업무담당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각 담당관·과 경리담당 팀장	-	각 담당관·과 경리담당 팀장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관 직 명	기타관서·임시관서	읍·면	읍·면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회 계 책 임 관	-	-	-
징 수 관	관서의 장	읍·면장	-
분 임 징 수 관	-	-	-
재 무 관	-	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는 분임재무관)	-
분 임 재 무 관	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	소장
총 괄 채 권 관 리 관	-	-	-
채 권 관 리 관	관서의 장	읍·면장	-
총 괄 부 채 관 리 관	-	-	-
부 채 관 리 관	-	-	-
총 괄 기 금 관 리 관	-	-	-
통 합 지 출 관	-	-	-
지 출 원	-	부읍면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는 일상경비출납원)	-
수 입 금 출 납 원	경리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 는 세입업무담당	세무·재무업무담당 팀 장	-
일 상 경 비 출 납 원	경리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 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경리 업무담당(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 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재무업무담당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출 납 원	경리업무담당	지출업무담당자	총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 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기 타 관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

대상경비	합의 한도			비고
	행정 복지 국장	재무 과장	경리 팀장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추정 금액 10억 이상	추정 금액 2천만원 이상	추정 금액 2백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추정 금액 5억원 이상	추정 금액 2천만원 이상	추정 금액 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백 만원이상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	-	2천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	2천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	2천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1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8. 기타 경비		2천만원 이상	2백만원 이상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

대상경비	합의대상		비고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장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	○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	○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	○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	○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	○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	○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	○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34호

남해군 보안업무규정 폐지규정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보안업무규정 폐지규정을 발령한다.

2020년 4월 2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보안업무규정 폐지규정

남해군 보안업무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 - 6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남 해 군 수

- 1. 하 천 명 : 오용천(지방하천)
- 2. 성 명 : 진지리00 외 5곳 대표 김기0
- 3.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 4. 점용목적 :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차량 진출입로
- 5. 점용위치 : 남해군 창선면 오용리 1343번지
- 6. 점용면적 : 7,710㎡
- 7. 점용기간 : 2020. 4. 1. ~ 2023. 3. 30. (3년)

남해군 고시 제 2020 - 65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 354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 붙임 참조

남 해 군 공 보

(16)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기준점) 고시내역

[남해군]

연번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	도근점	17001	중부	157587.09	281062.51	257895.66	281137.00	148.26	127-53-16.2915	34-54-49.8087	2020-03-16	고현면 남치리 5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	도근점	17002	중부	157443.64	281000.90	257752.21	281075.40	123.63	127-53-13.8149	34-54-45.1719	2020-03-16	고현면 남치리 918-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	도근점	17003	중부	157400.01	281090.98	257708.58	281165.47	121.87	127-53-17.3475	34-54-43.7303	2020-03-16	고현면 남치리 102-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4	도근점	17004	중부	157324.23	281115.31	257632.80	281189.80	111.37	127-53-18.2794	34-54-41.2647	2020-03-16	고현면 남치리 154-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5	도근점	17005	중부	157287.01	281124.78	257595.58	281199.27	105.77	127-53-18.6395	34-54-40.0541	2020-03-16	고현면 남치리 15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6	도근점	17006	중부	157239.29	281127.81	257547.86	281202.30	98.55	127-53-18.7420	34-54-38.5050	2020-03-16	고현면 남치리 136-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7	도근점	17007	중부	157181.06	281086.53	257489.63	281161.03	89.34	127-53-17.0959	34-54-36.6276	2020-03-16	고현면 남치리 112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8	도근점	17008	중부	156924.13	281020.25	257232.70	281094.72	63.19	127-53-14.3948	34-54-28.3103	2020-03-16	고현면 남치리 112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9	도근점	17009	중부	156734.44	280854.55	257043.01	280929.04	68.79	127-53-7.8029	34-54-22.2030	2020-03-16	고현면 남치리 113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0	도근점	17010	중부	156208.33	277761.05	256516.82	277835.48	49.84	127-51-5.7830	34-54-6.0007	2020-03-16	고현면 갈화리 산14-1	각인못	남해군청	신 규
11	도근점	17011	중부	156250.79	277736.55	256559.28	277810.98	46.66	127-51-4.8324	34-54-7.3853	2020-03-16	고현면 갈화리 산14-1	PVC	남해군청	신 규
12	도근점	17012	중부	156202.21	277738.74	256510.70	277813.17	45.25	127-51-4.9024	34-54-5.8083	2020-03-16	고현면 갈화리 산14-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3	도근점	17014	중부	151743.49	281210.86	252052.14	281285.48	137.81	127-53-20.0975	34-51-40.1643	2020-03-16	고현면 이어리 산16-17	PVC	남해군청	신 규
14	도근점	17015	중부	151750.39	281206.64	252059.05	281281.27	139.05	127-53-19.9339	34-51-40.3895	2020-03-16	고현면 이어리 산16-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5	도근점	17016	중부	151748.34	281216.63	252056.99	281291.26	137.02	127-53-20.3265	34-51-40.3200	2020-03-16	고현면 이어리 산16-17	각인	남해군청	신 규
16	도근점	17017	중부	151774.30	281311.64	252082.96	281386.27	108.51	127-53-24.0757	34-51-41.1352	2020-03-16	고현면 이어리 712-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7	도근점	17018	중부	151783.95	281290.60	252092.61	281365.23	113.23	127-53-23.2508	34-51-41.4544	2020-03-16	고현면 이어리 산4-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8	도근점	17019	중부	158391.22	278400.96	258699.74	278475.35	1.83	127-51-31.7214	34-55-16.6518	2020-03-16	고현면 차면리 545-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9	도근점	17020	중부	158356.39	278355.09	258664.92	278429.48	2.54	127-51-29.9027	34-55-15.5347	2020-03-16	고현면 차면리 544-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0	도근점	17021	중부	158279.33	278398.82	258587.86	278473.21	18.04	127-51-31.5992	34-55-13.0222	2020-03-16	고현면 차면리 산15-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1	도근점	17022	중부	158071.45	278431.42	258379.98	278505.81	40.09	127-51-32.8133	34-55-6.2680	2020-03-16	고현면 차면리 81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2	도근점	17023	중부	157980.92	278420.00	258289.44	278494.39	35.96	127-51-32.3327	34-55-3.3338	2020-03-16	고현면 차면리 81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3	도근점	17024	중부	157972.67	278433.63	258281.19	278508.02	35.60	127-51-32.8669	34-55-3.0622	2020-03-16	고현면 차면리 81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4	도근점	10001	중부	146616.36	281794.93	246924.95	281869.67	104.87	127-53-41.2929	34-48-53.6351	2020-03-16	남해읍 평리 1617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5	도근점	10002	중부	146669.99	281751.83	246978.58	281826.56	97.02	127-53-39.6157	34-48-55.3878	2020-03-16	남해읍 평리 1617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6	도근점	10003	중부	146696.88	281722.30	247005.48	281797.04	93.18	127-53-38.4636	34-48-56.2689	2020-03-16	남해읍 평리 548-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7	도근점	10004	중부	146749.89	281690.05	247058.48	281764.78	83.76	127-53-37.2131	34-48-57.9981	2020-03-16	남해읍 평리 546-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남 해 군 공 보

2020년 4월 28일

제 662 호 (17)

연번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28	도근점	10005	중부	146820.92	281660.43	247129.51	281735.17	72.89	127-53-36.0728	34-49-0.3113	2020-03-16	남해읍 평리 627-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9	도근점	10006	중부	146902.18	281630.40	247210.77	281705.14	64.88	127-53-34.9199	34-49-2.9567	2020-03-16	남해읍 평리 1617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0	도근점	10007	중부	146979.44	281630.44	247288.03	281705.17	58.78	127-53-34.9484	34-49-5.4635	2020-03-16	남해읍 평리 1617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1	도근점	10008	중부	147065.88	281573.57	247374.47	281648.30	50.48	127-53-32.7408	34-49-8.2846	2020-03-16	남해읍 평리 1617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2	도근점	10009	중부	149394.94	281998.04	249703.50	282072.73	17.69	127-53-50.2597	34-50-23.7312	2020-03-27	남해읍 북변리 265-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3	도근점	10010	중부	149406.41	282068.46	249714.96	282143.16	17.87	127-53-53.0352	34-50-24.0825	2020-03-27	남해읍 북변리 265-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4	도근점	10011	중부	149401.89	282139.38	249710.44	282214.07	19.25	127-53-55.8244	34-50-23.9153	2020-03-27	남해읍 북변리 325-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5	도근점	10012	중부	149333.83	282152.40	249642.38	282227.09	17.04	127-53-56.3125	34-50-21.7031	2020-03-27	남해읍 북변리 341-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6	도근점	10013	중부	149268.57	282156.79	249577.12	282231.48	15.17	127-53-56.4625	34-50-19.5843	2020-03-27	남해읍 북변리 616-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7	도근점	10014	중부	149221.61	282052.38	249530.18	282127.07	14.01	127-53-52.3367	34-50-18.0915	2020-03-27	남해읍 북변리 362-1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8	도근점	10015	중부	149307.95	282062.53	249616.51	282137.21	18.89	127-53-52.7665	34-50-20.8898	2020-03-27	남해읍 북변리 339-2	각인	남해군청	신 규
39	도근점	10016	중부	149370.25	281996.83	249678.81	282071.53	17.47	127-53-50.2034	34-50-22.9303	2020-03-27	남해읍 북변리 264-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40	도근점	10017	중부	150790.66	278469.78	251099.26	278544.50	621.75	127-51-31.8781	34-51-10.0217	2020-03-27	남해읍 아산리 산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41	도근점	10018	중부	150766.29	278455.23	251074.89	278529.95	624.39	127-51-31.2973	34-51-9.2351	2020-03-27	남해읍 아산리 산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42	도근점	10019	중부	150691.26	278469.23	250999.86	278543.95	633.06	127-51-31.8230	34-51-6.7966	2020-03-27	남해읍 아산리 산57-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43	도근점	10020	중부	150704.44	278454.18	251013.04	278528.90	634.25	127-51-31.2351	34-51-7.2285	2020-03-27	남해읍 아산리 1413-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44	도근점	10021	중부	150658.38	278443.36	250966.99	278518.08	631.89	127-51-30.7936	34-51-5.7371	2020-03-27	남해읍 아산리 1413-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45	도근점	10022	중부	149643.87	281833.01	249952.42	281907.71	25.56	127-53-43.8526	34-50-31.8556	2020-03-27	남해읍 북변리 265-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46	도근점	10023	중부	149489.44	281840.71	249798.00	281915.40	21.80	127-53-44.1011	34-50-26.8430	2020-03-27	남해읍 북변리 265-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47	도근점	10024	중부	149658.49	282121.23	249967.03	282195.92	27.80	127-53-55.2002	34-50-32.2462	2020-03-27	남해읍 북변리 434-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48	도근점	10025	중부	149521.11	282161.65	249829.64	282236.34	23.26	127-53-56.7424	34-50-27.7770	2020-03-27	남해읍 북변리 325-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49	도근점	13001	중부	147865.57	292527.80	248174.45	292602.51	11.60	128-0-44.0344	34-49-30.8672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979-3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50	도근점	13002	중부	147742.80	292501.46	248051.68	292576.17	13.12	128-0-42.9493	34-49-26.8924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1429-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51	도근점	13003	중부	147645.79	292492.49	247954.67	292567.19	15.20	128-0-42.5577	34-49-23.7479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120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52	도근점	13004	중부	147543.65	292545.93	247852.53	292620.64	17.59	128-0-44.6198	34-49-20.4165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916-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53	도근점	13005	중부	147368.30	292585.27	247677.18	292659.98	22.05	128-0-46.0982	34-49-14.7140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1025-7	표철	남해군청	신 규
54	도근점	13006	중부	147281.86	292662.51	247590.75	292737.22	25.50	128-0-49.1028	34-49-11.8844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935-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55	도근점	13007	중부	147267.71	292767.85	247576.59	292842.56	28.78	128-0-53.2416	34-49-11.3906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970-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56	도근점	13008	중부	147262.11	292844.48	247570.99	292919.19	32.26	128-0-56.2541	34-49-11.1838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96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57	도근점	13009	중부	147210.45	293056.62	247519.34	293131.33	56.68	128-1-4.5799	34-49-9.4380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산124-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58	도근점	13010	중부	147196.53	293193.55	247505.42	293268.26	73.30	128-1-9.9617	34-49-8.9415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산127-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59	도근점	13011	중부	147178.81	293254.09	247487.70	293328.80	68.40	128-1-12.3362	34-49-8.3465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산129-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60	도근점	13012	중부	147148.24	293332.58	247457.13	293407.29	56.58	128-1-15.4121	34-49-7.3288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435-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남 해 군 공 보

(18)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연번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61	도근점	13013	중부	147139.87	293440.88	247448.77	293515.59	48.24	128-1-19.6694	34-49-7.0217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421-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62	도근점	13014	중부	147201.25	293561.38	247510.15	293636.09	42.21	128-1-24.4348	34-49-8.9734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340-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63	도근점	13015	중부	147234.14	293641.59	247543.05	293716.30	42.06	128-1-27.6039	34-49-10.0141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34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64	도근점	13016	중부	147348.80	293743.29	247657.70	293817.99	34.64	128-1-31.6508	34-49-13.7005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31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65	도근점	13017	중부	147434.30	293785.24	247743.20	293859.95	31.66	128-1-33.3359	34-49-16.4607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31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66	도근점	13018	중부	147495.50	293874.52	247804.40	293949.22	29.41	128-1-36.8729	34-49-18.4168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303-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67	도근점	13019	중부	147597.31	293990.32	247906.21	294065.02	24.05	128-1-41.4701	34-49-21.6815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141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68	도근점	13020	중부	147678.68	294131.14	247987.59	294205.84	17.03	128-1-47.0432	34-49-24.2749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141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69	도근점	13021	중부	147740.16	294256.76	248049.08	294331.46	13.20	128-1-52.0106	34-49-26.2280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58-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70	도근점	13022	중부	147786.36	294401.91	248095.27	294476.61	9.72	128-1-57.7402	34-49-27.6784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68-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71	도근점	13023	중부	146966.94	293468.61	247275.84	293543.32	65.76	128-1-20.6914	34-49-1.4016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412-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72	도근점	13024	중부	146883.14	293516.71	247192.04	293591.43	80.94	128-1-22.5502	34-48-58.6669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413-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73	도근점	13025	중부	146834.57	293560.64	247143.48	293635.35	94.16	128-1-24.2588	34-48-57.0766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383-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74	도근점	13026	중부	146902.50	293565.12	247211.40	293639.83	81.09	128-1-24.4623	34-48-59.2790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384-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75	도근점	13027	중부	146945.75	293602.75	247254.65	293677.46	78.48	128-1-25.9601	34-49-0.6699	2020-03-27	삼동면 금송리 142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76	도근점	13028	중부	145956.19	289016.52	246265.00	289091.27	11.602	127-58-25.1513	34-48-30.0408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2204-8	표철	남해군청	신 규
77	도근점	13029	중부	145926.17	289204.08	246234.98	289278.83	13.124	127-58-32.5183	34-48-29.0078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2248-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78	도근점	13030	중부	145977.39	289366.12	246286.22	289440.86	15.203	127-58-38.9121	34-48-30.6188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150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79	도근점	13031	중부	145995.29	289458.79	246304.11	289533.53	17.589	127-58-42.5642	34-48-31.1703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150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80	도근점	13032	중부	146002.93	289601.7	246311.76	289676.44	22.047	127-58-48.1891	34-48-31.3730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150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81	도근점	13033	중부	145975.43	289698.98	246284.26	289773.73	25.497	127-58-52.0056	34-48-30.4500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1010-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82	도근점	13034	중부	145884.16	289687.17	246192.99	289761.91	28.785	127-58-51.5058	34-48-27.4924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2248-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83	도근점	13035	중부	145760.57	289704.88	246069.39	289779.63	32.258	127-58-52.1550	34-48-23.4766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1226-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84	도근점	13036	중부	145714.21	289814.47	246023.04	289889.22	56.684	127-58-56.4483	34-48-21.9377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산352-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85	도근점	13037	중부	145868.84	289867.43	246177.68	289942.17	73.300	127-58-58.5908	34-48-26.9383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143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86	도근점	13038	중부	145966.28	289906.46	246275.11	289981.20	68.403	127-59-0.1637	34-48-30.0872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143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87	도근점	13039	중부	146067.63	289962.46	246376.46	290037.20	56.578	127-59-2.4058	34-48-33.3578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143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88	도근점	13040	중부	146061.76	289808.34	246370.59	289883.08	48.2413	127-58-56.3406	34-48-33.2163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1157-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89	도근점	13041	중부	146096.66	289699.40	246405.49	289774.14	42.2072	127-58-52.0683	34-48-34.3833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1198-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90	도근점	13042	중부	146072.43	289641.46	246381.25	289716.21	42.0635	127-58-49.7800	34-48-33.6153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1191-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91	도근점	13043	중부	146064.68	289502.85	246373.50	289577.59	34.638	127-58-44.3241	34-48-33.4077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1165-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92	도근점	13044	중부	146050.95	289406.75	246359.78	289481.49	31.656	127-58-40.5384	34-48-32.9928	2020-03-27	삼동면 영지리 2184-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93	도근점	13045	중부	139795.43	293619.42	240104.34	293694.35	154.171	128-01-23.7578	34-45-08.6669	2020-03-27	삼동면 봉화리 산553-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남 해 군 공 보

2020년 4월 28일

제 662 호 (19)

연번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94	도근점	13046	중부	139761.01	293557.72	240069.92	293632.65	150.742	128-01-21.3189	34-45-07.5705	2020-03-27	상동면 봉화리 산553-1	표찰	남해군청	신 규
95	도근점	13047	중부	139788.48	293512.27	240097.39	293587.20	147.777	128-1-19.5432	34-45-8.4767	2020-03-27	상동면 봉화리 산553-1	표찰	남해군청	신 규
96	도근점	13048	중부	139773.26	293482.73	240082.16	293557.65	147.765	128-1-18.3755	34-45-7.9926	2020-03-27	상동면 봉화리 산553-1	표찰	남해군청	신 규
97	도근점	13049	중부	146418.74	294852.13	246727.51	294926.88	13.36	128-02-14.8997	34-48-43.1502	2020-03-27	상동면 동천리 1949-2	표찰	남해군청	신 규
98	도근점	13050	중부	146284.69	294956.40	246593.46	295031.15	10.09	128-02-18.9470	34-48-38.7658	2020-03-27	상동면 동천리 1085-6	표찰	남해군청	신 규
99	도근점	13051	중부	146234.02	294878.38	246542.79	294953.13	10.63	128-02-15.8572	34-48-37.1481	2020-03-27	상동면 동천리 2042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00	도근점	13052	중부	146170.10	294820.89	246478.88	294895.64	10.16	128-02-13.5696	34-48-35.0937	2020-03-27	상동면 동천리 2042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01	도근점	13053	중부	146085.41	294798.00	246394.20	294872.74	10.37	128-02-12.6345	34-48-32.3537	2020-03-27	상동면 동천리 2042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02	도근점	13054	중부	145970.13	294809.31	246278.92	294884.05	11.67	128-02-13.0325	34-48-28.6096	2020-03-27	상동면 동천리 1047-9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03	도근점	13055	중부	145983.25	294614.34	246292.05	294689.08	12.52	128-02-05.3684	34-48-29.1009	2020-03-27	상동면 동천리 1029-5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04	도근점	13056	중부	146100.94	294626.64	246409.72	294701.38	12.11	128-02-05.9000	34-48-32.9149	2020-03-27	상동면 동천리 1130-7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05	도근점	13057	중부	146229.06	294672.58	246537.85	294747.33	11.86	128-02-07.7594	34-48-37.0565	2020-03-27	상동면 동천리 1132-4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06	도근점	13058	중부	146324.76	294748.27	246633.54	294823.02	15.43	128-02-10.7757	34-48-40.1360	2020-03-27	상동면 동천리 1140-1	각인	남해군청	신 규
107	도근점	12001	중부	136469.23	292133.68	236778.14	292208.72	54.51	128-0-24.0465	34-43-21.2314	2020-03-31	상주면 상주리 76-2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08	도근점	12002	중부	136418.53	292075.25	236727.44	292150.28	54.98	128-0-21.7304	34-43-19.6054	2020-03-31	상주면 상주리 산32-4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09	도근점	12003	중부	136317.71	291893.16	236626.63	291968.20	60.83	128-0-14.5354	34-43-16.3933	2020-03-31	상주면 상주리 2178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10	도근점	12004	중부	136280.02	291864.97	236588.93	291940.01	54.59	128-0-13.4128	34-43-15.1794	2020-03-31	상주면 상주리 389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11	도근점	12005	중부	136161.46	291876.37	236470.37	291951.41	33.19	128-0-13.8142	34-43-11.3289	2020-03-31	상주면 상주리 345-1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12	도근점	12006	중부	136074.91	291855.46	236383.82	291930.50	29.13	128-0-12.9586	34-43-8.5274	2020-03-31	상주면 상주리 344-1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13	도근점	12007	중부	136008.41	291887.11	236317.32	291962.15	22.15	128-0-14.1762	34-43-6.3595	2020-03-31	상주면 상주리 355-5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14	도근점	12008	중부	135940.38	291948.13	236249.29	292023.17	19.70	128-0-16.5473	34-43-4.1323	2020-03-31	상주면 상주리 270-4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15	도근점	12009	중부	136003.21	291991.94	236312.12	292066.98	14.91	128-0-18.2935	34-43-6.1567	2020-03-31	상주면 상주리 2180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16	도근점	12010	중부	136104.13	292078.14	236413.04	292153.17	11.61	128-0-21.7204	34-43-9.4033	2020-03-31	상주면 상주리 134-4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17	도근점	12011	중부	136122.83	292233.18	236431.74	292308.21	2.16	128-0-27.8200	34-43-9.9597	2020-03-31	상주면 상주리 128-5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18	도근점	12012	중부	136180.11	292152.73	236489.03	292227.77	3.97	128-0-24.6814	34-43-11.8445	2020-04-01	상주면 상주리 128-7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19	도근점	12013	중부	136314.52	292206.99	236623.44	292282.02	4.47	128-0-26.8662	34-43-16.1881	2020-04-01	상주면 상주리 128-7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20	도근점	12014	중부	136084.93	291977.44	236393.84	292052.48	18.76	128-0-17.7559	34-43-8.8130	2020-04-01	상주면 상주리 362-1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21	도근점	12015	중부	136125.8	292032.31	236434.71	292107.35	17.39	128-0-19.9281	34-43-10.1212	2020-04-01	상주면 상주리 134-3	맨틀	남해군청	신 규
122	도근점	12016	중부	136174.15	292066.16	236483.07	292141.19	19.08	128-0-21.2770	34-43-11.6792	2020-04-01	상주면 상주리 134-3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23	도근점	12017	중부	136080.54	292351.43	236389.46	292426.46	2.39	128-0-32.4502	34-43-8.5492	2020-04-01	상주면 상주리 128-6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24	도근점	16001	중부	153118.68	277297.72	253427.34	277372.45	98.25	127-50-46.5191	34-52-25.8841	2020-04-01	서면 중현리 1555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25	도근점	16002	중부	153073.36	277209.73	253382.02	277284.45	101.91	127-50-43.0395	34-52-24.4377	2020-04-01	서면 중현리 658-1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26	도근점	16003	중부	153013.83	277076.40	253322.49	277151.12	100.39	127-50-37.7703	34-52-22.5425	2020-04-01	서면 중현리 1547	표찰	남해군청	신 규

남 해 군 공 보

(20)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연번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27	도근점	16004	중부	153019.52	277261.21	253328.18	277335.93	110.19	127-50-45.0483	34-52-22.6768	2020-04-01	서면 중현리 593-2	각인	남해군청	신 규
128	도근점	16005	중부	152948.85	277221.64	253257.51	277296.36	117.32	127-50-43.4669	34-52-20.3945	2020-04-01	서면 중현리 635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29	도근점	16006	중부	152901.38	277369.25	253210.04	277443.97	140.11	127-50-49.2627	34-52-18.8140	2020-04-01	서면 중현리 553-3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30	도근점	16007	중부	152816.23	277304.90	253124.89	277379.62	147.95	127-50-46.7008	34-52-16.0685	2020-04-01	서면 중현리 613-1	각인	남해군청	신 규
131	도근점	16008	중부	154395.54	276733.05	254704.19	276807.75	118.77	127-50-24.7078	34-53-7.4684	2020-04-01	서면 중현리 산75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32	도근점	16009	중부	154443.87	276787.67	254752.52	276862.37	134.51	127-50-26.8747	34-53-9.0216	2020-04-01	서면 정포리 산76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33	도근점	16010	중부	154384.92	276853.42	254693.58	276928.12	132.60	127-50-29.4441	34-53-7.0911	2020-04-01	서면 정포리 1005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34	도근점	16011	중부	154215.63	276689.95	254524.30	276764.63	97.33	127-50-22.9505	34-53-1.6430	2020-04-01	서면 정포리 995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35	도근점	16012	중부	154165.19	276605.23	254473.86	276679.90	90.31	127-50-19.5978	34-53-0.0294	2020-04-01	서면 정포리 산72-3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36	도근점	16013	중부	154140.06	276618.22	254448.72	276692.89	94.66	127-50-20.1009	34-52-59.2104	2020-04-01	서면 정포리 942-1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37	도근점	16014	중부	154161.50	276673.06	254470.17	276747.74	109.02	127-50-22.2676	34-52-59.8913	2020-04-01	서면 정포리 산72-3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38	도근점	16015	중부	154142.39	276742.91	254451.05	276817.58	118.62	127-50-25.0115	34-52-59.2520	2020-04-01	서면 정포리 산72-3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39	도근점	16016	중부	154055.06	276341.65	254363.73	276416.32	59.81	127-50-9.1830	34-52-56.5277	2020-04-01	서면 정포리 845	각인	남해군청	신 규
140	도근점	16017	중부	150012.11	277419.20	250320.78	277493.84	754.38	127-50-50.2644	34-50-45.0522	2020-04-01	서면 연족리 산38-2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41	도근점	16018	중부	150005.18	277358.03	250313.84	277432.67	762.84	127-50-47.8548	34-50-44.8440	2020-04-01	서면 연족리 산38-2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42	도근점	16019	중부	149899.71	277240.09	250208.38	277314.72	765.71	127-50-43.1775	34-50-41.4542	2020-04-01	서면 연족리 산38-2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43	도근점	11001	중부	143008.69	286157.09	243317.42	286231.86	40.61	127-56-31.5784	34-46-55.2878	2020-04-01	이동면 화계리 400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44	도근점	11002	중부	143049.50	286050.68	243358.23	286125.45	37.13	127-56-27.4086	34-46-56.6442	2020-04-01	이동면 화계리 425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45	도근점	11003	중부	142911.60	286019.45	243220.33	286094.23	21.15	127-56-26.1299	34-46-52.1792	2020-04-01	이동면 화계리 418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46	도근점	11004	중부	142844.04	286121.41	243152.77	286196.19	30.68	127-56-30.1148	34-46-49.9562	2020-04-01	이동면 화계리 368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47	도근점	11005	중부	143149.29	286209.06	243458.03	286283.82	67.14	127-56-33.6736	34-46-59.8340	2020-04-01	이동면 화계리 442-8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48	도근점	11006	중부	142883.10	285849.16	243191.82	285923.95	16.02	127-56-19.4229	34-46-51.3058	2020-04-01	이동면 용소리 87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49	도근점	11007	중부	142972.29	285880.03	243281.01	285954.80	21.20	127-56-20.6691	34-46-54.1905	2020-04-01	이동면 용소리 85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50	도근점	11008	중부	143075.49	285862.72	243384.21	285937.49	27.73	127-56-20.0263	34-46-57.5441	2020-04-01	이동면 용소리 87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51	도근점	11009	중부	143044.95	285991.08	243353.67	286065.85	28.26	127-56-25.0630	34-46-56.5144	2020-04-01	이동면 화계리 493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52	도근점	11010	중부	143119.64	285935.55	243428.36	286010.32	31.30	127-56-22.9066	34-46-58.9546	2020-04-01	이동면 화계리 483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53	도근점	11011	중부	142576.32	286835.64	242885.09	286910.43	4.94	127-56-58.1031	34-46-41.0527	2020-04-01	이동면 신전리 743-3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54	도근점	11012	중부	142520.87	286872.18	242829.64	286946.98	5.36	127-56-59.5195	34-46-39.2424	2020-04-01	이동면 신전리 743-6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55	도근점	11013	중부	142457.92	286968.56	242766.70	287043.35	4.34	127-57-03.2861	34-46-37.1705	2020-04-01	이동면 신전리 743-6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56	도근점	11014	중부	142550.66	286984.53	242859.44	287059.33	3.81	127-57-03.9487	34-46-40.1747	2020-04-01	이동면 신전리 743-3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57	도근점	11015	중부	142461.04	287099.79	242769.83	287174.58	3.04	127-57-08.4477	34-46-37.2318	2020-04-01	이동면 신전리 799-7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58	도근점	11016	중부	142700.41	287029.85	243009.19	287104.63	4.78	127-57-05.7861	34-46-45.0198	2020-04-01	이동면 신전리 733	표찰	남해군청	신 규
159	도근점	11017	중부	142708.42	286918.05	243017.19	286992.84	4.63	127-57-01.3929	34-46-45.3137	2020-04-01	이동면 신전리 728	표찰	남해군청	신 규

남 해 군 공 보

2020년 4월 28일

제 662 호 (21)

연번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60	도근점	11018	중부	142663.31	286838.00	242972.08	286912.79	4.23	127-56-58.2282	34-46-43.8745	2020-04-01	이동면 신전리 73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61	도근점	11019	중부	142648.93	286717.41	242957.70	286792.20	3.28	127-56-53.4807	34-46-43.4448	2020-04-01	이동면 화계리 72-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62	도근점	11020	중부	142539.82	286792.31	242848.59	286867.10	4.45	127-56-56.3857	34-46-39.8818	2020-04-01	이동면 화계리 91-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63	도근점	18001	중부	159223.46	282592.70	259532.03	282667.07	202.67	127-54-17.1428	34-55-42.4580	2020-04-01	설천면 문의리 769-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64	도근점	18002	중부	159160.49	282601.04	259469.05	282675.41	199.75	127-54-17.4488	34-55-40.4123	2020-04-03	설천면 남양리 313-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65	도근점	18003	중부	159123.42	282570.12	259431.98	282644.48	198.47	127-54-16.2173	34-55-39.2186	2020-04-03	설천면 남양리 산24-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66	도근점	18004	중부	158362.45	283175.24	258671.02	283249.76	151.48	127-54-39.7896	34-55-14.3502	2020-04-03	설천면 금음리 산6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67	도근점	18005	중부	158327.25	283105.31	258635.82	283179.82	150.36	127-54-37.0221	34-55-13.2288	2020-04-03	설천면 금음리 132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68	도근점	18006	중부	158304.54	283054.42	258613.11	283128.93	152.56	127-54-35.0094	34-55-12.5070	2020-04-03	설천면 금음리 1317-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69	도근점	18007	중부	158268.13	283074.83	258576.70	283149.35	152.87	127-54-35.8006	34-55-11.3195	2020-04-03	설천면 금음리 산160-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70	도근점	18008	중부	158297.10	282996.59	258605.68	283071.10	164.73	127-54-32.7287	34-55-12.2827	2020-04-03	설천면 금음리 산10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71	도근점	18009	중부	158222.77	283085.71	258531.34	283160.22	152.49	127-54-36.2127	34-55-9.8446	2020-04-03	설천면 금음리 산106-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72	도근점	19001	중부	155584.47	295540.59	255893.33	295615.16	3.19	128-2-45.7388	34-53-40.3050	2020-04-03	창선면 가인리 산3-2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73	도근점	19002	중부	155620.19	295465.34	255929.05	295539.92	2.81	128-2-42.7904	34-53-41.4895	2020-04-03	창선면 가인리 177-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74	도근점	19003	중부	155701.52	295439.23	256010.39	295513.80	15.39	128-2-41.7953	34-53-44.1372	2020-04-03	창선면 가인리 산5-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75	도근점	19004	중부	155639.91	295545.89	255948.78	295620.47	22.69	128-2-45.9704	34-53-42.1022	2020-04-03	창선면 가인리 17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76	도근점	19005	중부	149941.61	297248.39	250250.49	297322.98	2.47	128-3-50.6303	34-50-36.6398	2020-04-03	창선면 진동리 195-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77	도근점	19006	중부	149959.66	297126.27	250268.54	297200.87	2.77	128-3-45.8322	34-50-37.2675	2020-04-03	창선면 진동리 195-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78	도근점	19007	중부	150077.26	297037.51	250386.16	297112.11	2.00	128-3-42.3882	34-50-41.1140	2020-04-03	창선면 진동리 576-7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79	도근점	19008	중부	150223.86	296877.00	250532.76	296951.61	2.48	128-3-36.1330	34-50-45.9255	2020-04-03	창선면 진동리 60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80	도근점	19009	중부	150444.18	296857.60	250753.08	296932.21	7.83	128-3-35.4612	34-50-53.0804	2020-04-03	창선면 진동리 624-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81	도근점	19010	중부	150578.65	296895.22	250887.54	296969.83	21.39	128-3-36.9977	34-50-57.4303	2020-04-03	창선면 진동리 641-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82	도근점	19011	중부	150633.50	296705.65	250942.40	296780.27	16.25	128-3-29.5598	34-50-59.2752	2020-04-03	창선면 진동리 산194-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83	도근점	19012	중부	150641.82	296576.30	250950.72	296650.91	9.47	128-3-24.4723	34-50-59.5892	2020-04-03	창선면 진동리 628-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84	도근점	19013	중부	150714.51	296620.52	251023.41	296695.14	5.12	128-3-26.2431	34-51-1.9325	2020-04-03	창선면 진동리 산192-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85	도근점	19014	중부	150757.71	296685.15	251066.60	296759.77	3.99	128-3-28.8045	34-51-3.3120	2020-04-03	창선면 진동리 634-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86	도근점	19015	중부	150826.90	296692.21	251135.79	296766.82	3.97	128-3-29.1111	34-51-5.5544	2020-04-03	창선면 진동리 634-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87	도근점	19016	중부	150858.81	296767.04	251167.70	296841.66	2.42	128-3-32.0696	34-51-6.5641	2020-04-03	창선면 진동리 634-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88	도근점	19017	중부	153176.92	295535.50	253485.78	295610.11	80.20	128-2-44.5501	34-52-22.1938	2020-04-03	창선면 오룡리 112-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89	도근점	19018	중부	153280.65	295538.25	253589.52	295612.86	69.04	128-2-44.7009	34-52-25.5585	2020-04-03	창선면 가인리 산212-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90	도근점	19019	중부	153367.31	295561.89	253676.17	295636.50	54.47	128-2-45.6674	34-52-28.3619	2020-04-03	창선면 가인리 산212-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91	도근점	19020	중부	153404.98	295562.97	253713.84	295637.58	47.90	128-2-45.7251	34-52-29.5840	2020-04-03	창선면 가인리 산213-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92	도근점	19021	중부	153505.29	295610.69	253814.15	295685.30	28.51	128-2-47.6451	34-52-32.8223	2020-04-03	창선면 가인리 산214-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남 해 군 공 보

(22)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연번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193	도근점	19022	중부	153658.35	295621.88	253967.21	295696.49	7.95	128-2-48.1486	34-52-37.7846	2020-04-03	창선면 가인리 79-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94	도근점	19023	중부	153789.47	295691.41	254098.33	295766.02	4.39	128-2-50.9400	34-52-42.0150	2020-04-03	창선면 가인리 74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95	도근점	19024	중부	155308.72	294904.72	255617.59	294979.28	2.33	128-2-20.5862	34-53-31.5732	2020-04-06	창선면 가인리 181-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96	도근점	19025	중부	155423.82	295041.58	255732.68	295116.15	2.57	128-2-26.0226	34-53-35.2613	2020-04-06	창선면 가인리 181-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97	도근점	19026	중부	155672.90	295055.65	255981.76	295130.21	2.42	128-2-26.6782	34-53-43.3381	2020-04-06	창선면 가인리 171-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98	도근점	19027	중부	155622.61	294860.50	255931.47	294935.06	1.80	128-2-18.9729	34-53-41.7722	2020-04-06	창선면 가인리 513-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199	도근점	19028	중부	155507.70	294805.85	255816.56	294880.42	1.97	128-2-16.7742	34-53-38.0622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503-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00	도근점	19029	중부	155297.25	294838.00	255606.12	294912.56	2.68	128-2-17.9542	34-53-31.2235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477-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01	도근점	19030	중부	155195.43	294774.19	255504.29	294848.75	1.24	128-2-15.4000	34-53-27.9412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44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02	도근점	19031	중부	155115.55	294709.70	255424.41	294784.26	4.74	128-2-12.8280	34-53-25.3713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44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03	도근점	19032	중부	155035.59	294696.82	255344.45	294771.38	33.72	128-2-12.2883	34-53-22.7813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산36-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04	도근점	19033	중부	155010.46	294607.43	255319.32	294682.00	30.42	128-2-8.7583	34-53-21.9959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산35-1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05	도근점	19034	중부	155080.18	294474.24	255389.04	294548.81	46.55	128-2-3.5421	34-53-24.3026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517-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06	도근점	19035	중부	154908.97	294435.22	255217.83	294509.79	40.76	128-2-1.9361	34-53-18.7607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산26-38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07	도근점	19036	중부	154867.22	294371.66	255176.07	294446.23	38.61	128-1-59.4164	34-53-17.4272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산26-38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08	도근점	19037	중부	154773.81	294293.05	255082.67	294367.63	28.77	128-1-56.2835	34-53-14.4230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산138-1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09	도근점	19038	중부	154759.40	294201.40	255068.25	294275.98	30.49	128-1-52.6689	34-53-13.9858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산133-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10	도근점	19039	중부	154631.22	294141.30	254940.07	294215.87	31.49	128-1-50.2504	34-53-9.8471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산142-4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11	도근점	19040	중부	154539.49	294021.49	254848.35	294096.07	30.40	128-1-45.4962	34-53-6.9110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56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12	도근점	19041	중부	154484.74	293964.26	254793.60	294038.84	32.53	128-1-43.2204	34-53-5.1537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563-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13	도근점	19042	중부	154462.82	293870.34	254771.67	293944.92	39.79	128-1-39.5138	34-53-4.4735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산144-2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14	도근점	19043	중부	154403.24	293829.08	254712.09	293903.66	42.15	128-1-37.8651	34-53-2.5544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산144-2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15	도근점	19044	중부	154331.45	293815.66	254640.30	293890.24	44.44	128-1-37.3077	34-53-0.2295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산142-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16	도근점	19045	중부	154201.89	293868.54	254510.74	293943.12	48.95	128-1-39.3375	34-52-56.0084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산142-1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17	도근점	19046	중부	154149.64	293917.09	254458.50	293991.68	52.23	128-1-41.2281	34-52-54.2971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산142-5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18	도근점	19047	중부	154057.18	293918.98	254366.03	293993.57	54.06	128-1-41.2652	34-52-51.2963	2020-04-07	창선면 가인리 산144-3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19	도근점	19048	중부	152199.43	295148.09	252508.31	295222.71	58.49	128-2-28.8990	34-51-50.6105	2020-04-07	창선면 오룡리 314-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20	도근점	19049	중부	152140.21	295154.52	252449.09	295229.14	64.66	128-2-29.1279	34-51-48.6869	2020-04-07	창선면 오룡리 305-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21	도근점	19050	중부	152114.87	295284.99	252423.75	295359.61	85.82	128-2-34.2532	34-51-47.8209	2020-04-07	창선면 오룡리 산148-6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22	도근점	19051	중부	152138.12	295341.11	252447.00	295415.72	91.40	128-2-36.4716	34-51-48.5561	2020-04-07	창선면 오룡리 산148-1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23	도근점	19052	중부	152224.02	295421.99	252532.91	295496.61	113.08	128-2-39.6908	34-51-51.3161	2020-04-07	창선면 오룡리 산131-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24	도근점	19053	중부	150683.35	294182.07	250992.25	294256.68	46.42	128-1-50.2586	34-51-1.7455	2020-04-07	창선면 부윤리 301-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25	도근점	19054	중부	150731.15	294129.74	251040.05	294204.35	45.06	128-1-48.2181	34-51-3.3138	2020-04-07	창선면 부윤리 301-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남 해 군 공 보

연번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226	도근점	19055	중부	150761.06	294111.12	251069.95	294185.73	43.51	128-1-47.4973	34-51-4.2903	2020-04-07	창선면 부윤리 301-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27	도근점	17025	중부	155121.82	280185.28			11.52	127-52-40.8867	34-53-30.0685	2020-04-07	고현면 오곡리 751-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28	도근점	17026	중부	155038.01	280318.09			12.99	127-52-46.0878	34-53-27.3117	2020-04-07	고현면 오곡리 766-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29	도근점	17027	중부	154758.83	280491.18			20.18	127-52-52.8081	34-53-18.2041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936-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30	도근점	17028	중부	154809.08	280278.27			17.19	127-52-44.4415	34-53-19.8949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85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31	도근점	17029	중부	154919.89	280011.98			15.63	127-52-33.9933	34-53-23.5654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74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32	도근점	17030	중부	154850.22	279922.33			23.09	127-52-30.4394	34-53-21.3298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875-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33	도근점	17031	중부	154661.24	279978.51			23.51	127-52-32.5872	34-53-15.1824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85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34	도근점	17032	중부	154524.51	279916.41			31.53	127-52-30.0954	34-53-10.7636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85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35	도근점	17033	중부	154339.59	279940.35			35.88	127-52-30.9753	34-53-04.7567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1496-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36	도근점	17034	중부	154313.20	280036.34			33.97	127-52-34.7459	34-53-03.8734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85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37	도근점	17035	중부	154758.78	279958.04			23.57	127-52-31.8144	34-53-18.3531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85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38	도근점	17036	중부	154543.37	280410.63			23.50	127-52-49.5627	34-53-11.2360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151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39	도근점	17037	중부	154302.74	280258.28			35.26	127-52-43.4814	34-53-03.4716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산89-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40	도근점	17038	중부	154427.57	280127.25			28.10	127-52-38.3646	34-53-07.5587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1157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41	도근점	17039	중부	154565.60	280281.57			22.21	127-52-44.4884	34-53-11.9939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149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42	도근점	17040	중부	154216.58	279988.20			41.67	127-52-32.8175	34-53-00.7521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1481	옥상배수구	남해군청	신 규
243	도근점	17041	중부	154040.04	279902.72			49.36	127-52-29.3913	34-52-55.0479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1453-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44	도근점	17042	중부	153880.72	279863.89			69.47	127-52-27.8079	34-52-49.8895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1616-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45	도근점	17043	중부	153817.74	279913.97			69.50	127-52-29.7584	34-52-47.8321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1616-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46	도근점	17044	중부	153692.95	279987.67			75.75	127-52-32.6175	34-52-43.7623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1591-3	옥상배수구	남해군청	신 규
247	도근점	17045	중부	154147.04	279806.05			60.43	127-52-25.6211	34-52-58.5468	2020-04-08	고현면 오곡리 1380	옥상배수구	남해군청	신 규
248	도근점	12018	중부	136338.40	287815.67	236647.15	287891.18	50.68	127-57-34.3283	34-43-18.3504	2020-04-09	상주면 양아리 786-7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49	도근점	12019	중부	136396.50	287974.81	236705.38	288050.29	70.73	127-57-40.6028	34-43-20.1906	2020-04-09	상주면 양아리 산305-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50	도근점	12020	중부	136427.03	288106.20	236735.95	288181.68	84.48	127-57-45.7770	34-43-21.1423	2020-04-09	상주면 양아리 산31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51	도근점	12021	중부	136480.46	288217.41	236789.45	288292.85	99.83	127-57-50.1665	34-43-22.8429	2020-04-09	상주면 양아리 산31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52	도근점	12022	중부	136619.09	288234.06	236928.09	288309.42	109.94	127-57-50.8700	34-43-27.3362	2020-04-09	상주면 양아리 산317-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53	도근점	12023	중부	136627.92	288279.80	236936.93	288355.16	114.66	127-57-52.6708	34-43-27.6089	2020-04-09	상주면 양아리 산317-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54	도근점	12024	중부	136543.68	288318.05	236852.70	288393.46	122.72	127-57-54.1442	34-43-24.8641	2020-04-09	상주면 양아리 산31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55	도근점	12025	중부	136503.09	288415.84	236812.13	288491.27	132.39	127-57-57.9726	34-43-23.5170	2020-04-09	상주면 양아리 산33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56	도근점	12026	중부	136618.23	288580.80	236927.30	288656.19	154.51	127-58-04.4974	34-43-27.2026	2020-04-09	상주면 양아리 산327-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57	도근점	12027	중부	136641.98	288635.90	236951.06	288711.29	154.02	127-58-06.6715	34-43-27.9561	2020-04-09	상주면 상주리 산338-1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58	도근점	12028	중부	136710.98	288672.42	237019.79	288747.13	148.12	127-58-08.1059	34-43-30.1752	2020-04-09	상주면 상주리 산338-1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남 해 군 공 보

(24)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연번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259	도근점	12029	중부	136753.19	288738.61	237062.00	288813.32	140.01	127-58-10.7232	34-43-31.5239	2020-04-09	상주면 상주리 산338-1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60	도근점	12030	중부	136825.30	288883.89	237134.10	288958.56	124.96	127-58-16.4596	34-43-33.8180	2020-04-09	상주면 상주리 산325-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61	도근점	12031	중부	136907.47	289059.01	237216.28	289133.69	105.53	127-58-23.3723	34-43-36.4294	2020-04-09	상주면 상주리 산326-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62	도근점	12032	중부	136896.71	289225.97	237205.52	289300.66	92.48	127-58-29.9300	34-43-36.0279	2020-04-09	상주면 상주리 산328-7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63	도근점	12033	중부	136900.22	289382.78	237209.05	289457.48	78.11	127-58-36.0941	34-43-36.0931	2020-04-09	상주면 상주리 산317-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64	도근점	12034	중부	136866.62	289628.74	237175.54	289703.46	60.77	127-58-45.7483	34-43-34.9281	2020-04-09	상주면 상주리 산312-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65	도근점	12035	중부	136912.11	289719.68	237221.10	289794.38	54.26	127-58-49.3389	34-43-36.3775	2020-04-09	상주면 상주리 산312-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66	도근점	12036	중부	136974.86	289734.82	237283.86	289809.51	49.37	127-58-49.9575	34-43-38.4092	2020-04-09	상주면 상주리 산307-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67	도근점	12037	중부	137076.53	289757.81	237385.52	289832.50	43.23	127-58-50.8998	34-43-41.7005	2020-04-09	상주면 상주리 산305-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68	도근점	12038	중부	137209.42	289784.66	237518.44	289859.30	35.97	127-58-52.0040	34-43-46.0046	2020-04-09	상주면 상주리 산302-1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69	도근점	12039	중부	137287.30	289780.08	237596.32	289854.73	31.81	127-58-51.8545	34-43-48.5331	2020-04-09	상주면 상주리 219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70	도근점	11021	중부	142195.45	290200.68			126.13	127-59-10.2883	34-46-27.6464	2020-04-14	이동면 신전리 1540-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71	도근점	11022	중부	142228.39	290088.66			124.75	127-59-05.8963	34-46-28.7506	2020-04-14	이동면 신전리 4-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72	도근점	11023	중부	142272.92	289862.53			124.43	127-58-57.2144	34-46-30.2667	2020-04-14	이동면 신전리 산108-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73	도근점	11024	중부	142360.92	289527.06			123.00	127-58-43.8634	34-46-33.2275	2020-04-14	이동면 신전리 산116-4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74	도근점	11025	중부	142272.08	289526.40			123.77	127-58-43.8036	34-46-30.3452	2020-04-14	이동면 신전리 32	표석	남해군청	신 규
275	도근점	11026	중부	142367.79	289431.88			113.98	127-58-40.1233	34-46-33.4802	2020-04-14	이동면 신전리 산116-38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76	도근점	11027	중부	142314.41	289374.25			105.68	127-58-37.8367	34-46-31.7664	2020-04-14	이동면 신전리 산116-38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77	도근점	11028	중부	142295.23	289329.36			100.38	127-58-36.6416	34-46-31.1581	2020-04-14	이동면 신전리 산116-38	맨홀	남해군청	신 규
278	도근점	11029	중부	142229.74	289276.36			90.18	127-58-33.9553	34-46-29.4982	2020-04-14	이동면 신전리 산103-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79	도근점	11030	중부	142283.43	289078.56			85.53	127-58-26.1977	34-46-30.8535	2020-04-14	이동면 신전리 산102-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80	도근점	11031	중부	142329.21	288881.63			76.22	127-58-18.4711	34-46-32.4002	2020-04-14	이동면 신전리 산116-6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81	도근점	11032	중부	142320.25	288806.15			77.26	127-58-15.4998	34-46-32.1332	2020-04-14	이동면 신전리 산116-6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82	도근점	11033	중부	142416.06	288653.49			79.41	127-58-09.5330	34-46-35.2891	2020-04-14	이동면 신전리 산116-6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83	도근점	11034	중부	142533.73	288414.86			78.23	127-58-00.1936	34-46-39.1812	2020-04-17	이동면 신전리 산116-6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84	도근점	11035	중부	143788.87	287911.27			21.36	127-57-40.8591	34-47-20.6097	2020-04-17	이동면 무림리 66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85	도근점	11036	중부	143932.09	287757.93			17.86	127-57-34.8817	34-47-24.7554	2020-04-17	이동면 무림리 660	PVC	남해군청	신 규
286	도근점	11037	중부	143763.27	287486.70			28.20	127-57-24.1518	34-47-19.3612	2020-04-17	이동면 무림리 61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87	도근점	11038	중부	143729.68	287698.56			21.87	127-57-32.4715	34-47-18.2063	2020-04-17	이동면 무림리 66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88	도근점	11039	중부	143789.37	287280.43			36.46	127-57-16.4906	34-47-20.2716	2020-04-17	이동면 무림리 1778-11	각인	남해군청	신 규
289	도근점	11040	중부	143810.10	287124.64			43.30	127-57-09.9296	34-47-20.9920	2020-04-17	이동면 무림리 176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90	도근점	11041	중부	145535.37	288216.04			5.59	127-57-53.5036	34-48-16.6368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06	맨홀	남해군청	신 규
291	도근점	11042	중부	145700.54	288368.06			9.53	127-57-59.5461	34-48-21.9486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868-2	목상물구멍	남해군청	신 규

남 해 군 공 보

연번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292	도근점	11043	중부	145623.94	288048.67			3.60	127-57-46.9533	34-48-19.5624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0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93	도근점	11044	중부	145750.23	287832.90			3.38	127-57-38.5126	34-48-23.7268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518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94	도근점	11045	중부	145798.94	288580.76			15.63	127-58-07.9502	34-48-25.7524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410-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95	도근점	11046	중부	145592.82	288497.47			13.80	127-58-04.5958	34-48-18.4133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839	각인	남해군청	신 규
296	도근점	11047	중부	145376.74	288333.27			8.75	127-57-58.5524	34-48-11.4535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794-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97	도근점	11048	중부	145631.13	288648.87			14.55	127-58-10.5660	34-48-19.6090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447-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98	도근점	11049	중부	145301.48	288635.89			14.28	127-58-09.9308	34-48-08.9173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58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299	도근점	11050	중부	145014.56	288498.55			12.95	127-58-04.4199	34-47-59.6508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63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00	도근점	11051	중부	145000.48	288263.75			9.05	127-57-55.1788	34-47-59.2669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63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01	도근점	11052	중부	145113.85	288011.99			4.63	127-57-45.3189	34-48-03.2350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63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02	도근점	11053	중부	144711.56	288579.25			17.10	127-58-07.4798	34-47-49.7945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63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03	도근점	11054	중부	144656.01	288739.99			21.72	127-58-13.7812	34-47-47.9421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63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04	도근점	11055	중부	144557.97	288660.06			26.46	127-58-10.6004	34-47-44.7860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325	각인	남해군청	신 규
305	도근점	11056	중부	144431.46	288669.34			26.76	127-58-10.9175	34-47-40.6782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87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06	도근점	11057	중부	144351.63	288609.31			31.21	127-58-08.5263	34-47-38.1066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441-7	옥상물구멍	남해군청	신 규
307	도근점	11058	중부	144462.72	288718.00			30.47	127-58-12.8433	34-47-41.6774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2075-6	제수변맨홀	남해군청	신 규
308	도근점	11059	중부	144523.95	288808.03			32.19	127-58-16.4075	34-47-43.6360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399-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09	도근점	11060	중부	144601.00	288948.40			33.07	127-58-21.9579	34-47-46.9180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384-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10	도근점	11061	중부	144707.86	289050.89			32.50	127-58-26.2938	34-47-49.5270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767-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11	도근점	11062	중부	144799.67	289117.15			31.56	127-58-28.6707	34-47-52.4852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058-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12	도근점	11063	중부	144911.94	289131.46			27.90	127-58-29.2761	34-47-56.1234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2059-7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13	도근점	11064	중부	144961.68	289168.90			28.96	127-58-30.7679	34-47-57.7256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035-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14	도근점	11065	중부	145033.74	289256.74			31.77	127-58-34.2502	34-48-00.3611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986-2	맨홀	남해군청	신 규
315	도근점	11066	중부	145115.56	289185.42			27.53	127-58-31.4760	34-48-02.7133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97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16	도근점	11067	중부	145154.85	288970.46			22.74	127-58-23.3571	34-48-04.5520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205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17	도근점	11068	중부	145480.16	288852.75			18.47	127-58-18.5287	34-48-14.6471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65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18	도근점	11069	중부	145308.36	289062.68			26.95	127-58-26.7212	34-48-09.7070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26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19	도근점	11070	중부	145137.24	289460.96			37.65	127-58-42.3226	34-48-03.3299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784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20	도근점	11071	중부	144877.07	289758.81			57.51	127-58-53.9389	34-47-54.7949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74-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21	도근점	11072	중부	144906.54	289531.66			43.21	127-58-45.1537	34-47-55.8225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204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22	도근점	11073	중부	144742.03	289393.12			41.53	127-58-39.5033	34-47-50.5285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2066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23	도근점	11074	중부	144641.37	289255.73			47.90	127-58-34.6126	34-47-47.3055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175-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24	도근점	11075	중부	144707.87	289201.94			38.89	127-58-31.9708	34-47-49.4800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1172	제수변맨홀	남해군청	신 규

남 해 군 공 보

(26)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연번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소재지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325	도근점	11076	중부	144943.83	288899.63			22.39	127-58-20.1695	34-47-57.2308	2020-04-17	이동면 난음리 778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26	도근점	11077	중부	144078.51	288517.91			28.84	127-58-04.8285	34-47-29.2734	2020-04-17	이동면 무림리 44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27	도근점	11078	중부	144217.65	288492.80			32.34	127-58-03.8934	34-47-33.7958	2020-04-17	이동면 무림리 684-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28	도근점	11079	중부	144066.99	288346.68			19.50	127-57-58.8994	34-47-28.9529	2020-04-17	이동면 무림리 407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29	도근점	11080	중부	144092.21	288182.49			16.96	127-57-51.6415	34-47-29.8222	2020-04-17	이동면 무림리 38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30	도근점	11081	중부	143940.60	288190.22			26.87	127-57-51.8885	34-47-24.9007	2020-04-17	이동면 무림리 816-1	옥상배수구	남해군청	신 규
331	도근점	11082	중부	143809.51	288283.22			33.84	127-57-55.4966	34-47-20.6184	2020-04-17	이동면 무림리 810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32	도근점	11083	중부	143711.95	288120.12			35.08	127-57-49.4558	34-47-17.5037	2020-04-17	이동면 무림리 809	각인	남해군청	신 규
333	도근점	10026	중부	149313.05	280920.59	249621.61	280995.30	55.96	127-53-07.8295	34-50-21.3847	2020-04-17	남해읍 아산리 924-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34	도근점	10027	중부	149428.69	280809.23	249737.24	280883.94	65.86	127-53-03.4871	34-50-25.1685	2020-04-17	남해읍 아산리 924-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35	도근점	10028	중부	149446.05	280904.18	249754.61	280978.88	60.49	127-53-07.2296	34-50-25.7048	2020-04-17	남해읍 아산리 144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36	도근점	10029	중부	149324.83	281006.52	249633.38	281081.23	50.22	127-53-11.2152	34-50-21.7421	2020-04-17	남해읍 아산리 313-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37	도근점	10030	중부	149343.89	280951.01	249652.44	281025.71	58.16	127-53-09.0371	34-50-22.3764	2020-04-17	남해읍 아산리 977-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38	도근점	10031	중부	149274.04	280963.02	249582.59	281037.73	53.21	127-53-09.4858	34-50-20.1065	2020-04-17	남해읍 아산리 969-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39	도근점	17046	중부	155898.39	277142.22	256206.93	277216.66	5.55	127-50-41.3086	34-53-56.1158	2020-04-17	고현면 갈화리 294-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40	도근점	17047	중부	155875.23	277029.12	256183.76	277103.57	6.05	127-50-36.8469	34-53-55.3950	2020-04-17	고현면 갈화리 282-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41	도근점	17048	중부	155858.24	277083.51	256166.78	277157.96	12.12	127-50-38.9833	34-53-54.8291	2020-04-17	고현면 갈화리 297-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42	도근점	17049	중부	155833.45	277020.95	256141.99	277095.40	13.11	127-50-36.5112	34-53-54.0418	2020-04-17	고현면 갈화리 311-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43	도근점	17050	중부	155795.32	277024.47	256103.85	277098.91	16.72	127-50-36.6372	34-53-52.8035	2020-04-17	고현면 갈화리 311-2	제수변맨홀	남해군청	신 규
344	도근점	17051	중부	155784.75	276978.50	256093.28	277052.94	15.20	127-50-34.8232	34-53-52.4731	2020-04-17	고현면 갈화리 311-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45	도근점	17052	중부	155805.35	277101.64	256113.88	277176.09	23.73	127-50-39.6798	34-53-53.1079	2020-04-17	고현면 갈화리 30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46	도근점	17053	중부	155748.48	277032.65	256057.02	277107.10	22.79	127-50-36.9440	34-53-51.2816	2020-04-17	고현면 갈화리 311-9	제수변맨홀	남해군청	신 규
347	도근점	17054	중부	155762.97	277115.15	256071.51	277189.60	32.16	127-50-40.1978	34-53-51.7293	2020-04-17	고현면 갈화리 311-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48	도근점	17055	중부	155710.99	277161.78	256019.54	277236.23	30.18	127-50-42.0170	34-53-50.0301	2020-04-17	고현면 갈화리 341-2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49	도근점	17056	중부	155703.13	277102.47	256011.67	277176.92	36.37	127-50-39.6787	34-53-49.7912	2020-04-17	고현면 갈화리 311-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50	도근점	17057	중부	155709.13	277041.45	256017.66	277115.90	28.35	127-50-37.2774	34-53-50.0023	2020-04-17	고현면 갈화리 315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51	도근점	17058	중부	155737.86	276976.51	256046.39	277050.96	18.60	127-50-34.7296	34-53-50.9521	2020-04-17	고현면 갈화리 311-1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52	도근점	16020	중부	151591.41	275997.60	251900.05	276072.15	202.30	127-49-54.8259	34-51-36.6813	2020-04-17	서면 노구리 산69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53	도근점	16021	중부	151571.57	276091.20	251880.21	276165.75	199.89	127-49-58.5039	34-51-36.0125	2020-04-17	서면 노구리 산69-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354	도근점	16022	중부	151609.48	276220.52	251918.12	276295.07	222.94	127-50-03.6070	34-51-37.2077	2020-04-17	서면 노구리 산69-3	표철	남해군청	신 규

남해군 고시 제2020 - 66호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및 제80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055-860-8656) 및 미조면행정복지센터(055-860-8206)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0일

남 해 군 수

1. 관광지명 : 송정관광지 (변경없음)
2. 위 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20-1번지 일원 (변경없음)
3. 조성면적 : 604,018㎡ (변경없음)
4. 관광지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조성계획 면적 (㎡)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604,018	604,018	-	100.0	
공공편익시설지구	106,259	106,259	-	17.6	-
숙박시설지구	166,993	166,993	-	27.7	-
상가시설지구	29,156	29,156	-	4.8	-
운동·오락시설지구	5,112	5,112	-	0.8	-
휴양·문화시설지구	40,189	40,637	증 448	6.7	조경휴게소 변경(증 448㎡)
기타시설지구	256,309	255,861	감 448	42.4	조경휴게소 변경에 따른 면적 축소(감 448㎡)

5. 관계도면 : 실음생략
6. 관련도서 비치 :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및 미조면행정복지센터
 - 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남 해 군 공 보

(28)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붙임>

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① 관광지명 : 송정관광지
- ② 위 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일원
- ③ 지정면적 : 604,018㎡
- ④ 사업기간 : 1998년 ~ 2021년
- ⑤ 관광지 조성권자 : 남해군수
- ⑥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1. 시설지구계획(변경)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총 계	604,018	604,018	-	100.0	
공공편익시설지구	106,259	106,259	-	17.6	주차장, 오수처리장, 샤워탈의장/화장실, 관리사무소, 마을회관, 도로
숙박시설지구	166,993	166,993	-	27.7	관광숙박, 편의시설
상가시설지구	29,156	29,156	-	4.8	음식점, 상가
운동·오락시설지구	5,112	5,112	-	0.8	게이트볼장, 해수풀장
휴양·문화시설지구	40,189	40,637	증) 448	6.7	야외공연장,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공원, 전망대, 조경휴게소
기타시설지구	256,309	255,861	감) 448	42.4	녹지

2. 시설지구별 세부계획(변경)

구 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총계	604,018	604,018	-	184,640	-	-	-	-	
소 계	106,259	106,259	-	3,600	-	-	-	-	
공공편익시설지구	주 차 장	24,112	24,112	-	-	-	-	가-1~2	
	오수처리장	2,828	2,828	-	1,000	40.0	100.0	1	가-3~4
	샤워탈의장/화장실	451	451	-	350	40.0	100.0	2	가-5
	관리사무소	2,390	2,390	-	1,900	40.0	100.0	2	가-6~7
	마을회관	436	436	-	350	40.0	100.0	2	가-8
	도 로	76,042	76,042	-	-	-	-	-	-

구 분	부지면적(m ²)			건축연면적(m ²)	건폐율(%)	용적률(%)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숙박시설지구	소 계	166,993	166,993	-	133,590	-	-	-	
	관광숙박.편의시설	166,993	166,993	-	133,590	40.0	100.0	2,4 나-1~17	
상가시설지구	소 계	29,156	29,156	-	22,500	-	-	-	
	음 식 점	3,217	3,217	-	2,500	40.0	100.0	2 다-1~2	
	상 가	25,939	25,939	-	20,000	40.0	100.0	2 다-3~9	
운동락지구	소 계	5,112	5,112	-	-	-	-	-	
	게이트볼장	1,065	1,065	-	-	-	-	-	라-1
	해수풀장	4,047	4,047	-	-	-	-	-	라-2
휴양문화시설지구	소 계	40,189	40,637	증) 448	24,950	-	-	-	
	야외공연장	498	498	-	-	-	-	-	마-1
	청소년수련원	10,884	10,884	-	8,700	40.0	100.0	4	마-2
	야영장	7,768	7,768	-	6,150	40.0	100.0	2	마-3~4,9
	공 원	8,563	8,563	-	3,400	40.0	100.0	2	마-5~6
	전 망 대	6,492	6,492	-	5,000	-	-	-	마-7
	조경휴게소(변경)	5,984	6,432	증) 448	1,700	40.0	100.0	4	마-8
기타시설지구	소 계	256,309	255,861	감) 448	-	-	-	-	
	녹 지(변경)	256,309	255,861	감) 448	-	-	-	-	바-1

7] 사업비 - 변경없음

남 해 군 공 보

(30)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나.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남해군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90,215.7	-	579,490,215.7	100.00			
육지부합계	357,678,651.7	-	357,678,651.7	61.72			
도 시 지 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4		
	주거지역	1,264,968.0	-	1,264,968.0	0.2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1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0.01		
	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0.03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지역	10,352,602.0	-	10,352,602.0	1.79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5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34		
	관 리 지 역	소계	136,571,188.7	-	136,571,188.7	23.56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7,236,052.1	-	47,236,052.1	8.15	
		생산관리지역	53,325,240	-	53,325,240	9.20	
		계획관리지역	36,009,896.6	-	36,009,896.6	6.21	
		농림지역	153,977,522.0	-	153,977,522.0	26.57	
	자연환경보전지역	55,328,658.0	-	55,328,658.0	9.55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28		

주) 용도지역 기준은 남해군 고시 제2019-100호(2019.08.01.) 기준임[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② 용도지구(관광·휴양)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송정 관광지 개발진흥 지구	관광 · 휴양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707일원	지구단위계 획에 의한 개발	604,018	-	604,018	1994.10.21 (경고 제1994-244호)	

다.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송정 관광지	관광· 휴양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707번지 일원	604,018	-	604,018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총괄표

구 분	면 적 (m ²)			구 성 비 (%)	비 고
	당초	변경	변경후		
총 계	604,018	604,018	-	100.0	
공공편익 시설지구	106,259	106,259	-	17.6	
숙박시설 지 구	166,993	166,993	-	27.7	
상가시설 지 구	29,156	29,156	-	4.8	
운동·오락 시설지구	5,112	5,112	-	0.8	
휴양·문화 시설지구	40,189	40,637	증) 448	6.7	
기타시설 지 구	256,309	255,861	감) 448	42.4	

남 해 군 공 보

(32)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나.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도입시설지구			시설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			도입시설지구		시설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			
구분	면적(㎡)	비율(%)	시설명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총면적	604,018	100.0				604,018	100.0			-	면적증가
공공편의 시설지구	106,259	17.6	소 계	106,259	100.0	106,259	17.6	106,259	100.0	-	
			주 차 장	24,112	22.7			24,112	22.7	-	
			오수처리장	2,828	2.7			2,828	2.7	-	
			샤워탈의장/ 화장실	451	0.4			451	0.4	-	
			관리사무소	2,390	2.3			2,390	2.2	-	
			마을회관	436	0.4			436	0.4	-	
			도 로	76,042	71.5			76,042	71.6	-	조경휴게소와 중복구간(630㎡) 포함 면적
숙박시설 지 구	166,993	27.7	소 계	166,993	100.0	166,993	27.7	166,993	100.0	-	
			관광숙박·편 의시설	166,993	100.0			166,993	100.0	-	
상가시설 지 구	29,156	4.8	소 계	29,156	100.0	29,156	4.8	29,156	100.0	-	
			음 식 점	3,217	11.0			3,217	11.0	-	
			상 가	25,939	89.0			25,939	89.0	-	
운동오락 지 구	5,112	0.8	소 계	5,112	100.0	5,112	0.8	5,112	100.0	-	
			게이트볼장	1,065	20.8			1,065	20.8	-	
			해수풀장	4,047	79.2			4,047	79.2	-	
휴양문화 시설지구	40,189	6.7	소 계	40,189	100.0	40,637	6.7	40,637	100.0	증448	
			야외공연장	498	1.2			498	1.2	-	
			청소년수련원	10,884	27.1			10,884	26.8	-	
			야 영 장	7,768	19.3			7,768	19.1	-	1개소 신설
			공원	8,563	21.3			8,563	21.1	-	
			전 망 대	6,492	16.2			6,492	16.0	-	
			조경휴게소 (변경)	5,984	14.9			6,432	15.8	증448	도로와 중복 구간(630㎡) 제외 면적
기타시설 지 구	256,309	42.4	소 계	256,309	100.0	255,861	42.4	255,861	100.0	감448	
			녹 지(변경)	256,309	100.0			255,861	100.0	감448	

■ 변경 사유서

구분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휴양·문화 시설지구	○ 규모증가 : 448m ² - 40,189m ² → 40,637m ²	· 조정휴게소 변경에 따른 시설지구 면적 증가
변경	기타시설 지구	○ 규모축소 : 448m ² - 256,309m ² → 255,861m ²	· 기존 녹지내 조정휴게소 확장에 따른 시설지구 면적 축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총괄표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계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기정	계	26	8,872	76,042	4	3,636	38,552	6	2,363	20,078	16	2,873	17,412
기정	중로	1	80	991	-	-	-	-	-	-	1	80	991
기정	소로	25	8,792	75,051	4	3,636	38,552	6	2,363	20,078	15	2,793	16,421

(2)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80	소로1-1	소로2-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	10	보 조 간선도로	2,053	1125-4도	1009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95	1218-1도	소로2-2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3	10~13.5	국지도로	903	소로2-5	962-3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85	소로1-1	소로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	8	보 조 간선도로	565	소로1-1	산325-2도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444	소로1-1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1	소로2-1	소로2-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713	소로1-1	소로2-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	9	국지도로	462	소로2-4	소로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	7	국지도로	578	소로1-1	727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73	소로3-6	소로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	6~7	국지도로	805	소로2-2	1034-5잡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7	소로1-1	1030양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55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70	소로3-3	소로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32	소로2-4	산327-1 입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34	소로2-4	1462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6	7~ 11.5	국지도로	48	소로1-3	896-2입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57	소로1-1	산348-12 입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	1.5	산책로	18	소로3-3	소로3-13	산책로			
기정	소로	3	12	6.0	국지도로	67	소로3-1	1230-1전	산책로			
기정	소로	3	13	3~4	산책로	678	소로3-3	산281-8 입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4	1.5	산책로	14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5	2.0	산책로	13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6	1.5	산책로	12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나.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112	-	24,112		
기정	가-1	주차장	미조면 송정리 1139일원	20,931	-	20,93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가-2	주차장	미조면 송정리 1007-2일원	3,181	-	3,18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다. 하수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28	-	2,828		
기정	16	송정 하수도1	미조면 송정리 1176-1	1,430	-	1,430	남해고시 2009-10 (2009.2.2)	
기정	가-3	송정 하수도2	미조면 송정리 1018	1,398	-	1,39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라. 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563	-	8,563	-	
기정	마-5	송정 공원1	소공원	미조면 송정리 754	927	-	92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마-6	송정 공원2	소공원	미조면 송정리 752	7,636	-	7,636	경남고시 2015-173 (2015.4.9)	

남 해 군 공 보

(36)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마.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6,309	감)448	255,861	-	
기정	바-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369-1번지 일원	14,817	-	14,81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76-2번지 일원	47	-	4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70번지 일원	397	-	397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4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36-1번지 일원	11,304	-	11,30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5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7-3번지 일원	1,331	-	1,33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6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7번지 일원	541	-	54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7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4번지 일원	445	-	44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8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3번지 일원	621	-	62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9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3-1번지 일원	424	-	42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0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753번지 일원	3,123	-	3,12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748번지 일원	6,964	-	6,96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06-1번지 일원	2,782	-	2,782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05번지 일원	190	-	190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4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40-24번지 일원	778	-	77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5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50번지 일원	84,095	-	84,09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표계속)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바-16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48-12번지 일원	6,518	-	6,518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7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857-6번지 일원	20,832	-	20,832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8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31번지 일원	9,646	-	9,646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19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837-6번지 일원	443	-	44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0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22-2번지 일원	113	-	113	경남고시 2015-173 (2015.4.9)	
변경	바-2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54-2번지 일원	64,099	감)448	63,651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24-1번지 일원	12,995	-	12,995	경남고시 2015-173 (2015.4.9)	
기정	바-2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904번지 일원	13,804	-	13,804	경남고시 2015-173 (2015.4.9)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바-21	녹지	○ 면적감소(감 448m ²) : 64,099m ² → 63,651m ²	• 관광실크로드 사업(조경휴게소)부지 확장에 의한 녹지 경계조정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604,018	-	604,018	
공공편익 시설지구	가	소계	106,259	-	106,259	
		가-1	20,931	미조면 송정리 1139번지 일원	20,931	주차장
		가-2	3,181	미조면 송정리 1007-2번지 일원	3,181	주차장
		가-3	1,398	미조면 송정리 1018번지 일원	1,398	오수처리장
		가-4	1,430	미조면 송정리 1176-3번지 일원	1,430	오수처리장
		가-5	451	미조면 송정리 1175-6번지 일원	451	샤워탈의장/화장실
		가-6	1,063	미조면 송정리 1124-6번지 일원	1,063	관리사무소
		가-7	1,327	미조면 송정리 1067-15번지 일원	1,327	관리사무소
		가-8	436	미조면 송정리 1065번지 일원	436	마을회관
		-	76,042	-	76,042	도로
숙박 시설지구	나	소계	166,993	-	166,993	
		나-1	7,073	미조면 송정리 1230-2번지 등 일원	7,07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2	25,852	미조면 송정리 1104번지 등 일원	25,852	관광숙박·휴게시설
		나-3	3,045	미조면 송정리 719-1번지 등 일원	3,045	관광숙박·휴게시설
		나-4	2,072	미조면 송정리 1036번지 등 일원	2,072	관광숙박·휴게시설
		나-5	4,827	미조면 송정리 1030번지 등 일원	4,82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6	18,687	미조면 송정리 855번지 등 일원	18,68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7	10,698	미조면 송정리 857번지 등 일원	10,698	관광숙박·휴게시설
		나-8	8,164	미조면 송정리 854번지 등 일원	8,164	관광숙박·휴게시설
		나-9	7,290	미조면 송정리 830번지 등 일원	7,29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0	6,157	미조면 송정리 839번지 등 일원	6,15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1	6,553	미조면 송정리 837번지 등 일원	6,55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2	1,630	미조면 송정리 847번지 등 일원	1,63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3	4,520	미조면 송정리 878번지 등 일원	4,52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4	10,813	미조면 송정리 1009번지 등 일원	10,81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5	24,587	미조면 송정리 903번지 등 일원	24,58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6	21,635	미조면 송정리 896-1번지 등 일원	21,635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7	3,390	미조면 송정리 862번지 등 일원	3,390	관광숙박·휴게시설

남 해 군 공 보

2020년 4월 28일

제 662 호 (39)

(표계속)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상가 시설지구	다	소계	29,156	-	29,156		
		다-1	1,984	미조면 송정리 1122번지 일원	1,984	음식점	
		다-2	1,233	미조면 송정리 1119번지 일원	1,233	음식점	
		다-3	1,665	미조면 송정리 1126번지 등 일원	1,665	상 가	
		다-4	634	미조면 송정리 1221번지 등 일원	634	상 가	
		다-5	4,764	미조면 송정리 1226번지 등 일원	4,764	상 가	
		다-6	560	미조면 송정리 1034-4번지 등 일원	560	상 가	
		다-7	9,251	미조면 송정리 870번지 등 일원	9,251	상 가	
		다-8	7,083	미조면 송정리 1019번지 등 일원	7,083	상 가	
		다-9	1,982	미조면 송정리 1007-1번지 등 일원	1,982	상 가	
운동·오락 시설지구	라	소계	5,112	-	5,112	-	
		라-1	1,065	미조면 송정리 1167번지 일원	1,065	게이트볼장	
		라-2	4,047	미조면 송정리 1038번지 일원	4,047	해수풀장	
휴양문화 시설지구	마	소계	기정	40,189	-	40,189	증 448m ²
			변경	40,637		40,637	
		마-1	498	미조면 송정리 1175-6번지 일원	498	야외공연장	
		마-2	10,884	미조면 송정리 1175-4번지 일원	10,884	청소년수련원	
		마-3	4,063	미조면 송정리 1124-9번지 일원	4,063	야영장	
		마-4	1,245	미조면 송정리 880번지 일원	1,245	야영장	
		마-5	927	미조면 송정리 754번지 일원	927	공 원	
		마-6	7,636	미조면 송정리 752번지 일원	7,636	공 원	
		마-7	6,492	미조면 송정리 892번지 일원	6,492	전망대	
		마-8	기정	5,984	미조면 송정리 산352-4번지 일원	5,984	조경휴게소 (증 448m ²)
변경	6,432	6,432					
마-9	2,460	미조면 송정리 산848번지 일원	2,460	야영장			
기타 시설지구	바	소계	기정	256,309	-	256,309	증 448m ²
			변경	255,861		255,861	
		바-1	기정	256,309	미조면 송정리 1369번지 등 일원	256,309	녹 지 (감 448m ²)
			변경	255,861		255,861	

남 해 군 공 보

(40)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공공 편의시설 지구)	가-1 / 가-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	
			권 장 용 도	주차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가-3 / 가-4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원순환관련시설	
			권 장 용 도	오수처리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1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5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샤워탈의장 / 화장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6 / 가-7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관리사무소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8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마을회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나 (숙박 시설 지구)	나-1 ~ 나-10 / 나-12 ~ 나-15 / 나-17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	
			권 장 용 도	관광숙박·편의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나-11 / 나-16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	
			권 장 용 도	관광숙박·편의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표계속)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다 (상가 시설 지구)	다-1 / 다-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음식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다-3 ~ 다-9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권 장 용 도	상 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라 (운동· 오락시설 지구)	라-1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권 장 용 도	게이트볼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라 (운동· 오락시설 지구)	라-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권 장 용 도	해수풀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남 해 군 공 보

(42)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표계속)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마 (휴양·문화시설지구)	마-1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권 장 용 도	야외공연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권 장 용 도	청소년수련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3 / 마-4 / 마-9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련시설	
			권 장 용 도	야영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5 / 마-6	용도	지 정 용 도	-		
		권 장 용 도	공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 (휴양·문화시설지구)	마-7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 장 용 도	전망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마-8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 장 용 도	조경휴게소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바 (기타 시설지구)	바-1	용도	지 정 용 도	-	
			권 장 용 도	녹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남해군 고시 제2020 - 72호

남해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하여 2020년 7월 1일 효력이 상실되는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정비하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28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에 비치]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총괄

구분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29	9,679	85,811	1	222	2,274	22	5,572	50,646	6	3,885	32,891
	변경	11	3,326	35,377	1	149	1,516	7	998	9,223	3	2,179	24,638
광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대로	기정	-	-	-	-	-	-	-	-	-	-	-	-
	변경	-	-	-	-	-	-	-	-	-	-	-	-
중로	기정	3	3,417	36,570	-	-	-	1	669	10,334	2	2,748	26,236
	변경	2	1,711	24,113	-	-	-	1	113	2,892	1	1,598	21,221
소로	기정	26	6,262	49,241	1	222	2,274	21	4,903	40,312	4	1,137	6,655
	변경	9	1,615	11,264	1	149	1,516	6	885	6,331	2	581	3,417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	15	국지 도로	669	남해읍 북변리 362-7	남해읍 북변리 5-1	일반 도로	-	경고 제19호 (1996.07.01.)	
변경	중로	2	4	15	국지 도로	113	남해읍 북변리 362-7	남해읍 북변리 373-10	일반 도로	-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961	남해읍 북변리 434-2	남해읍 서변리 135	일반 도로	-	건고 제406호 (1973.10.12.)	
변경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598	남해읍 북변리 434-2	남해읍 서변리 135	일반 도로	-		
폐지	중로	3	2	12	국지 도로	787	남해읍 차산리 239-2	남해읍 차산리 36-18	일반 도로	-	경고 제235호 (2000.10.30.)	

남 해 군 공 보

2020년 4월 28일

제 662 호 (45)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222	남해읍 북변리 32	남해읍 남변리 141-1	일반 도로	-	경고 제109호 (1996.07.01.)	
변경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49	남해읍 남변리 150-3	남해읍 남변리 141-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44	남해읍 남변리 654	남해읍 서변리 49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104	남해읍 남변리 654	남해읍 남변리 478-12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54	남해읍 남변리 260-2	남해읍 남변리 293-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폐지	소로	2	4	8	국지 도로	269	남해읍 남변리 332-3	남해읍 남변리 280-10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폐지	소로	2	5	8	국지 도로	143	남해읍 북변리 335-1	남해읍 북변리 619 (소로2-13)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폐지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1	남해읍 북변리 300-40	남해읍 북변리 304-1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폐지	소로	2	15	8	국지 도로	22	남해읍 서변리 199-8	남해읍 서변리 49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폐지	소로	2	19	8	국지 도로	205	남해읍 북변리 474	남해읍 북변리 505-3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208	남해읍 아산리 355-2	남해읍 아산리 336-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변경	소로	2	24	8	국지 도로	40	남해읍 아산리 343-9	남해읍 아산리 336-1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29	8	국지 도로	112	남해읍 아산리 341-3	남해읍 아산리 330-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폐지	소로	2	30	8	국지 도로	1,051	남해읍 아산리 462-1	남해읍 아산리 1039-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남 해 군 공 보

(46)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31	8	국지 도로	123	남해읍 아산리 899	남해읍 아산리 853-3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기정	소로	2	32	8	국지 도로	147	남해읍 아산리 969-3	남해읍 아산리 49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변경	소로	2	32	8	국지 도로	59	남해읍 아산리 969-3	남해읍 아산리 495-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39	8~12	국지 도로	651	남해읍 남변리 402-1	남해읍 아산리 447-5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변경	소로	2	39	8~12	국지 도로	504	남해읍 남변리 402-1	남해읍 아산리 447-5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40	8	국지 도로	341	남해읍 서변리 154-4	남해읍 서변리 286-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폐지	소로	2	44	8	국지 도로	112	남해읍 북변리 259-7	남해읍 북변리 256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폐지	소로	2	46	8	국지 도로	224	남해읍 아산리 173-7	남해읍 북변리 454-1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기정	소로	2	47	8	국지 도로	159	남해읍 차산리 766-9	남해읍 아산리 173-10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변경	소로	2	47	8	국지 도로	27	남해읍 차산리 774-12	남해읍 아산리 173-10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56	8	국지 도로	134	남해읍 아산리 258-3	남해읍 아산리 242-4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폐지	소로	2	123	8	국지 도로	110	남해읍 북변리 275-14	남해읍 북변리 31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폐지	소로	2	124	8	국지 도로	83	남해읍 북변리 311	남해읍 북변리 322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기정	소로	2	129	8	국지 도로	405	남해읍 북변리 570-1	남해읍 아산리 173-3	일반 도로	-	남해고 제92호 (2019.07.18)	
변경	소로	2	129	8	국지 도로	151	남해읍 북변리 141-1	남해읍 북변리 597-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479	남해읍 서변리 282-5	남해읍 평리 1211-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341	남해읍 서변리 282-5	남해읍 서변리 193답	일반 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경 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394	남해읍 아산리 415-2	남해읍 아산리 493-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240	남해읍 아산리 415-2	남해읍 아산리 493-2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3	6	6	국지 도로	146	남해읍 아산리 830-1	남해읍 아산리 924-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폐지	소로	3	8	6	국지 도로	118	남해읍 남변리 501-5	남해읍 남변리 255-9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2-4	중로2-4	• 노선단축 (L=669m → L=113m)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중로3-1	중로3-1	• 노선단축 (L=1,961m → L=1,598m)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중로3-2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1-4	소로1-4	• 노선단축 (L=222m → L=149m)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1	소로2-1	• 노선단축 (L=244m → L=104m)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3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4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5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11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남 해 군 공 보

(48)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15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19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24	소로2-24	• 노선단축 (L=208m → L=40m)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29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30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31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32	소로2-32	• 노선단축 (L=147m → L=59m)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39	소로2-39	• 노선단축 (L=651m → L=504m)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40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44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46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47	소로2-47	• 노선단축 (L=159m → L=27m)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56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123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124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2-129	소로2-129	• 노선단축 (L=405m → L=151m)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3-1	소로3-1	• 노선단축 (L=479m → L=341m)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3-2	소로3-2	• 노선단축 (L=394m → L=240m)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3-6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소로3-8	-	• 노선폐지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2. 공간시설

가. 녹지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4	녹 지	완충 녹지	남해읍 북변리 359-6 일원	1,757	감)1,757	-	경고 제391호 (1993.11.25.)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4	완충녹지	• 폐 지 - 면적 : 1,757㎡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 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교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21	고현 중학교	중학교	고현면 포상리 152 일원	15,210	감)15,21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1	고현중학교	• 폐 지 - 감) 15,210㎡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4. 방재시설

가. 하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기점	종점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폐지	1	평천	지방2급	남해읍 평리 (내금저수지)	남해읍 평리 (봉천합류점)	1.88	5~30	62,500	경고 제271호 (1982.11.29.)	봉천합류
폐지	6	삼화천	지방2급	삼동면 봉화리	삼동면 (화천합류점)	1.5	18~20	23,408 (13,186)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지정면적)
폐지	7	영지천	지방2급	삼동면 영지리	삼동면 영지리 (남해합류점)	2.55	12~20	62,610	경고 제271호 (1982.11.29.)	
폐지	8	상덕천	지방2급	남면 상가리 1221답	남면 상가리 433-10전	2.7	8~30	50,083 (21,794)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지정면적)
폐지	9	임포천	지방2급	남면 임포리	남면 선구리	2	7~30	67,615	경고 제271호 (1982.11.29.)	
폐지	10	정포천	지방2급	서면 중현리 121-2유	서면 정포리 1077-30제	2.85	6~24	41,695 (38,283)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지정면적)
폐지	11	대사천	지방2급	고현면 대사리	고현면 포상리	2.33	18~34	47,733 (40,045)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지정면적)
폐지	12	대곡천	지방2급	고현면 대곡리	고현면 도마리	2.12	18~21	48,492 (20,085)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지정면적)
폐지	13	창선천	지방2급	옥천리 820 유옥천저수지	수산리103-1제 동대만	3.97	4~30	78,944 (65,053)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지정면적)
폐지	14	서상천	지방2급	서면 서상리	서면 대정리	4.5	25~81	32,833 (160,031)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지정면적)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평천	• 폐지 - 감) 62,500㎡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6	삼화천	• 폐지 - 감) 23,408㎡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7	영지천	• 폐지 - 감) 62,610㎡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8	상덕천	• 폐지 - 감) 50,083㎡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9	임포천	• 폐지 - 감) 67,615㎡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0	정포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 지 - 감) 41,6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11	대사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 지 - 감) 47,7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12	대곡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 지 - 감) 48,4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13	창선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 지 - 감) 78,9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14	서상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 지 - 감) 32,8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도래 이전 남해군 재정여건 및 집행계획을 고려한 미집행 구간 우선 해제

남해군 고시 제2020 - 73호

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남해군 공고 제2019-1712호(2019.12.19.)로 공람·공고된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206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및 주민복지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4월 28일

남 해 군 수

1. 남해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조서 : 붙임 참조
 2.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 도시건축과(☎055-860-3413) 및 주민복지과(☎055-860-3853)에 비치]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군관리계획(장사시설:자연장지) 결정(변경) 조서

1. 보건위생시설

가. 장사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장사시설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산206번지 일원	-	증)33,200	33,200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장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 A = 33,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장된 마을공동묘지의 재개발을 통한 미관개선 및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를 조성하고자 금회 군 계획시설(장사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536호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 법규명 :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개정 이유

「지방세기본법」이 2019. 12. 31.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 인용조항 등을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3조)

나.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의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 건수 제한 부분 삭제 (안 제7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남해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지서식 참조)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남해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연락처 : 남해군청 재무과 055-860-3462 (팩스 055-860-3705)

- ※ 붙임 1. 개정규칙안
- 2.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를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연간 정기선정 대상 납세자의 수가 20인을 초과하는” 을 “정기선정의” 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법 제88조제4항제2호” 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납세자의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 10. (생 략)</p>	<p>제2조(정의) -----</p> <p>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 등”이라 한다.)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p> <p>2. ~ 10. (현행과 같음)</p>
<p>제7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군수는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 납세자의 수가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p> <p>② ~ ⑥ (생 략)</p>	<p>제7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① -----</p> <p>----- 정기선정의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9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를 부분세무조사</p>	<p>제9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p>

현 행	개 정 안
<p>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법 제88조제4항제2호</u> 단서 또는 법 제96조제5항에(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p> <p>3. ~ 7. (생 략)</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88조제5항제2호</u> ----- ----- ----- ----- --</p> <p>3. ~ 7.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 2020 - 538호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종합적인 추진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따라,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남해군아동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로 통합·제정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 협약에 따른 운영경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에서 구성·운영토록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본조례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나.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다. 보조금 지원 등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7조)
- 마. 아동위원 운영 및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23조)
- 바. 드림스타트 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제28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는 2020. 5. 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청년혁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나. 의견을 제출할 곳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청년혁신과 아동복지팀
- 2) 연락처 : 팩스 055-860-3750, 전화 055-860-8648, 864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청년혁신과 아동복지팀(055-860-86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2.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폐지) 1부.
 3. 남해군 아동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폐지) 1부.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복지 증진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사업
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사업
3.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4.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6.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지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적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건강·보육(교육)·복지 등 프로그램 지원 사업

- 3. 아동학대 예방·방지 홍보 및 교육 지원 사업
 - 4. 아동급식 지원 사업
 - 5. 아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련 행사 또는 사업
 - 6.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 7.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
 - 8.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지원 사업
 - 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 아동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8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시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 위원회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우선 보호조치)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4장 아동위원

제18조(아동위원)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남해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제19조(구성) ① 아동위원은 읍·면별 각 2명 이상 4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사회에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③ 아동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1조,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0조(임무) ①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협의회 구성 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회의 임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남해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협의회 기능 및 운영)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관리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5. 어린이날 등 아동 관련 각종 행사 지원 사업
6. 보호대상아동 결연·후원 사업
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3조(재정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제20조의 임무와 제22조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등 아동 관련 행사지원 사업비
2. 보호대상아동 결연·후원 사업비
3. 아동위원 간 정보교류 및 사기진작 관련 필요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장 드림스타트

제24조(드림스타트) 군수는 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 드림스타트(이하 “드림스타트”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25조(사업) 드림스타트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 조사, 발굴을 통한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
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자문을 위하여 남해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과 남해군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 2. 아동복지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과 갖춘 사람

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와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8조(기능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드림스타트 사업의 총괄 및 조정을 위한 전년도 사업 수행내용 및 금년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
- 2. 사업지역 및 지원대상 확대, 서비스 지원, 예산운용
- 3. 지역자원 개발·연계 및 관리, 지자체 내 광역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 4.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
-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 관계 지침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남해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남해군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폐지]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남해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군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촉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아동 관련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망, 질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그 밖에 해촉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남해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직접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우선 보호조치)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경우, 우선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폐지] 남해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라 남해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남해군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각 읍·면별 2명 이상 4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3조(임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3.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4. 아동학대 신고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
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3. 위원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협의회 구성 등) ①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임무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남해군 아동위원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아동위원증 교부) 군수는 위원에게 아동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544호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4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9.11.26. 공포, 2020.5.27.시행) 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함.

3. 주요내용

-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의 정의 변경(안 제15조제2항)
- 신고대상 외부강의 등의 신고 기한 및 절차 변경(안 제15조제2항)
- 명칭 변경(안 제15조제4항)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5월 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4,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전화 055-860-3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 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로, “미리” 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외부강의등을” 을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생 략)</p> <p>② 공무원은 <u>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u>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u></p> <p>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u>외부강의등을</u> 제한할 수 있다.</p> <p>⑤ ~ ⑧ (생 략)</p>	<p>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u> ----- ----- <u>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u> <u>에 -----.</u> ----- ----- -----.</p> <p><삭 제></p> <p>④ ----- ----- ----- ----- <u>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u> -----.</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남해군 공고 제2020 - 545호

분묘개장 공고(1차)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이동면 초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내에서 발견된 분묘의 처리를 위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6일

남 해 군 수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분묘소재지	지 번	지목	분묘기수
경남 남해군 이동면 초음리	산 40-1, 산42-1, 산 40-6, 산 40-7	임	유연분묘 무연분묘 20기
	산 42-2, 산 40-3, 산 40-4, 산 40-5, 1675-1	도	
	1676-2	묘	

- 2. 개장사유 : 이동면 초곡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 3. 공고기간 :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간
-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관계인)와 협의 후 개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인 임의 개장
 - ※ 안치 장소 : 경남 남해군 남해추모누리 봉안당 (봉안 후 10년간 안치)
- 5. 신고처 : 남해군청 건설교통과 도로팀 (☎ 055-860-3314, 3317)
- 6.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 7.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거나 누락된 분묘 또는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같음합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547호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안 제2조)
- 나.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라. 감독 및 평가,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2020년 5월 4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할 곳

1)주 소: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2)연락처: 전화 055-860-3142, 팩스 055-860-3737

다.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행정복지국 행정과 군민소통팀(전화 055-860-31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방법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외국인등”이란 「제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제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3. “외국인 명예경찰대”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법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등으로 구성되어 제4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①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는 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방범대 대원은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남해경찰서 관할 부서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③ 방범대의 활동범위는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④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군 단위의 1개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⑤ 외국인 명예경찰대 대원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군에 위치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등으로 남해경찰서에 활동 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지원 활동
3. 교통 및 기초질서 지도
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② 외국인 명예경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순찰 및 질서유지 활동
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군 행사 협조·지원
4. 체류 외국인 관련 정보의 교류 및 범죄피해자 지원
5. 그 밖에 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등록되어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자율방범대, 남해군자율방범대연합회, 외국인 명예경찰대(이하 “방범대등” 이라 한다) 로 한다.

제6조(지원 등) ① 군수는 방범대등이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방범초소 설치 및 수선비용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용
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간식비용
4. 방범대등 소속 대원의 사기진작 및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 등 행사비용
5. 제10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비용
6. 그 밖에 지역사회 치안 및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남해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사업비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방범·순찰 활동에 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4. 남해경찰서장으로부터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게을리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방범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방법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방법대등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연합회 구성 및 기능) ① 각 읍·면 자율방법대의 정보교류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남해군자율방법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방법대의 대장과 임원을 회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며, 지역간 방법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방법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군수는 방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방법대등 또는 그 대원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군수는 남해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방법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법대, 연합회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55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주소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소하천명			
소하천명		봉성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서면 대정리 534번지 인근		
	면적	1 m ²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m ²
	기간	2020. 4. 17. ~ 영구점용		
	목적 및 사유	경영실습 임대농장 온실 진입로 안내판 설치		

남해군 공고 제2020 - 563호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7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위치	사업규모	사업기간	보상대상	사업 시행자
남해군 청사신축 사업	남해군 서변리 24-1번지 일원	18,250㎡	2020 - 2024 (예정)	토지 및 건축물 등 (71필지 9,813㎡)	남해군수

2.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붙임 및 열람장소에 비치

- 가. 토 지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138-8번지 외 70필지
- 나. 지장물건 :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는 토지에 있는 물건 일체

3.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 가. 열람기간 : 2020. 4. 27. ~ 2020. 5. 11.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남해군청 재무과 청사신축팀 (☎055-860-3186)
- 다.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

4.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보상시기 : 2020년 9월 ~ 2021년 3월
- ※ 추후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 통보 예정임
- 나. 보상방법 :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공용지 등의 협의 취득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지장물건 철거 또는 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다. 보상금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보상금 산정

- 1) 평가기관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추천시 3인)
- 2) 산정금액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라. 보상절차 : 계약체결 후 등기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 은행 계좌로 입금

보상계획 열람공고 ⇒ 감정평가 ⇒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 통지)

┌ ① 협의(계약체결시) ⇒ 소유권이전 ⇒ 보상금 지급(계좌입금)

└ ② 협의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마.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 통지 예정

바.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감정평가사의 추천

- 1) 경상남도지사의 추천 : 경상남도지사는 같은 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음.
- 2) 토지소유자의 추천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

토 지 소재지	지목	편입 면적 (㎡)	소 유 자		날인 (인감)	전화번호 (자택및휴대폰)
			성 명	주 소		

5. 기타사항

가. 열람결과 소유권기타 권리관계 등이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상기 열람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보상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협의시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청사신축팀(☎055-860-31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편입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1부.

남해군 청사신축 편입부지 토지조서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합계 (71필지)					9,813	9,813						
1	남해읍	북변리	138-3	대	6	6	기획재정부					
2	남해읍	북변리	138-8	대	334	334	박*석 (1/3)	남해읍 화전로 122번길 **	**은행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이*엽 (1/3)					
							박*혁 (1/3)					
3	남해읍	북변리	138-10	대	67	67	기획재정부					
4	남해읍	북변리	139-4	대	138	138	한*준 (1/2)	남해읍 망운로 9번길 **				
							최*순 (1/2)					
5	남해읍	북변리	140-13	대	45	45	이*호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				
6	남해읍	서변리	18-5	대	156	156	이*자	남해읍 망운로 9번길 **				
7	남해읍	서변리	18-7	대	30	30	기획재정부					
8	남해읍	서변리	18-9	대	6	6	기획재정부					
9	남해읍	서변리	20-4	대	170	170	구*엽	남해읍 망운로9번길 **				
10	남해읍	서변리	20-5	대	170	170	정*수	남해읍 망운로9번길 **				
11	남해읍	서변리	24-3	도	83	83	국토교통부					
12	남해읍	서변리	24-6	대	214	214	송*영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	남해 *** 협동조합	남해읍 화전로 60-4	근저당권	
13	남해읍	서변리	24-14	대	8	8	김*범	남해읍 망운로9번길 **				
14	남해읍	서변리	24-21	대	5	5	박*근	남해읍 망운로 21번길 **	남해** 협동조합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5	가압류	
15	남해읍	서변리	25-2	대	244	244	김*희	남해읍 망운로 **				
16	남해읍	서변리	25-3	대	240	240	공*성	남해읍 망운로9번길 **				
17	남해읍	서변리	25-4	대	205	205	최*규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				
18	남해읍	서변리	25-5	대	411	411	이*호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				
19	남해읍	서변리	25-7	대	152	152	이*석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				
20	남해읍	서변리	26-1	대	39	39	이*호	남해읍 스포츠크로 20 **	*** 새마을금 고	남해읍 망운로 59	근저당권	

남 해 군 공 보

(86)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21	남해읍	서변리	26-3	전	3	3	이*이	울산시 중구 당산1길 **				
22	남해읍	서변리	26-7	전	4	4	이*애	남해읍 망운로19번길 **				
23	남해읍	서변리	26-8	대	47	47	정*심	남해읍 망운로21번길 **				
24	남해읍	서변리	26-11	대	1	1	이*이	울산시 중구 당산1길 **				
25	남해읍	서변리	26-18	전	5	5	이*애	남해읍 망운로19번길 **				
26	남해읍	서변리	26-20	전	10	10	송*영	남해읍 망운로19번길 **				
27	남해읍	서변리	28-1	대	172	172	송*영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	남해*** 협동조합	남해읍 화전로 60-4	근저당권	
28	남해읍	서변리	28-2	대	145	145	이*애	남해읍 망운로19번길 **	남해** 협동조합	남해읍 화전로 78번길 8	근저당권	
29	남해읍	서변리	28-3	대	198	198	고*숙	부산 동래구 온천장로 **				
30	남해읍	서변리	28-4	대	230	230	박*문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	**은행	남해읍 화전로 116	근저당권	
31	남해읍	서변리	28-6	대	66	66	이*자 (1/2) 설*정 (1/2)	남해군 남해읍 회전로 **	송**	남해읍 망운로19번길	가등기권자	
32	남해읍	서변리	29-1	대	256	256	김*표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408번길 **				
33	남해읍	서변리	29-2	대	407	407	김*근	남해읍 망운로9번길 **				
34	남해읍	서변리	29-3	대	145	145	김*범	남해읍 망운로9번길 **				
35	남해읍	서변리	29-4	대	139	139	김*범	남해읍 망운로9번길 **				
36	남해읍	서변리	29-5	대	69	69	김*자	남해읍 망운로9번길 **	남해** 협동조합	남해읍 화전로 78번길 8	근저당권	
37	남해읍	서변리	30	대	340	340	조*산	남해읍 망운로9번길 **	남해** 협동조합	남해읍 화전로 78번길 8	근저당권	
38	남해읍	서변리	31	대	217	217	고*훈	남해읍 망운로9번길 **				
39	남해읍	서변리	33-2	대	136	136	김*애 (468/492) 문*경 (24/492)	남해읍 망운로9번길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				

남 해 군 공 보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지분)	주소	성명	주소	관리 종류	
40	남해읍	서변리	34-1	대	129	129	이*목	서울 종로구 충신2길 **	진주**농 업협동조 합	진주시 남강로 1689	근저당권	
41	남해읍	서변리	34-2	대	265	265	임*숙 (11/13)	남해읍 망운로 21번가길 **				
							임*호 (2/13)	울산시 중구 신기12길 **				
42	남해읍	서변리	35	대	63	63	조*자	남해읍 망운로9번길 **				
43	남해읍	서변리	36-1	대	201	201	정*자	하남시 하남대로 887번길 **				
44	남해읍	서변리	37-1	대	149	149	김*권	부산시 남구 오륙도로 **				
45	남해읍	서변리	37-2	대	108	108	김*수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	남해** 협동조합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5	근저당권	
46	남해읍	서변리	37-3	대	92	92	정*심	남해읍 화전로59번길 **	**은행	서울시 중구 통일로 120	근저당권	
47	남해읍	서변리	38	대	147	147	김*순	남해읍 화전로59번길 **				
54	남해읍	서변리	39	대	144	144	정*호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				
48	남해읍	서변리	39-1	대	159	159	박*나	남해읍 망운로9번길 **	***농업 협동조합	고현면 탐동로 40	근저당권	
49	남해읍	서변리	39-2	대	10	10	정*엽	남해읍 망운로 21번가길 **				
50	남해읍	서변리	39-3	대	60	60	정*엽	남해읍 망운로 21번가길 **				
51	남해읍	서변리	39-5	대	102	102	김*권	부산시 남구 용호로 **				
52	남해읍	서변리	39-7	대	106	106	김*권	부산시 남구 용호로 **				
53	남해읍	서변리	39-9	대	46	46	송*심	남해읍 망운로 19번길 **				
55	남해읍	서변리	41-6	대	49	49	박*숙	남해읍 화전로 59번길 **				
56	남해읍	서변리	44	대	98	98	임*주	남해읍 망운로 9번길 **				
57	남해읍	서변리	46	대	103	103	김*철	남해읍 평현로 **	** 새마을 금고	창선면 창선로 81	근저당권	
58	남해읍	서변리	47	대	301	301	최*울	남해읍 화전로 59번길 **	남해** 협동조합	남해읍 화전로 95번길 5	근저당권	

남 해 군 공 보

(88)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동			대장 면적	편입 면적	성명(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종류	
59	남해읍	서변리	49-1	대	208	208	류*춘	남해읍 망운로 9번길 **				
60	남해읍	서변리	49-2	대	255	255	김*훈	남해읍 망운로 9번길 **	남해 *** 협동조합	미조면 미조로 235	근저당권	
61	남해읍	서변리	50-1	대	246	246	최*	남해읍 화진로 59번길 **				
62	남해읍	서변리	51	대	116	116	정*균	남해읍 망운로 9번길 **				
63	남해읍	서변리	52	대	146	146	윤*수	남해읍 망운로 9번길 **	** 새마을 금고	진주시 진양호로 234	근저당권	
64	남해읍	서변리	53-1	대	74	74	김*태	남해읍 망운로 9번길 **	*** 새마을 금고	남해읍 망운로 59	근저당권	
65	남해읍	서변리	65-1	대	128	128	박*구	구미시 옥계산강로길 **	남해** 협동조합	남해읍 화진로 95번길 5	근저당권, 지상권	
66	남해읍	서변리	65-2	대	193	193	정*순	남해읍 망운로19번길 **				
67	남해읍	서변리	65-3	대	56	56	이*석	남해읍 망운로19번길 **				
68	남해읍	서변리	65-4	대	160	160	윤*숙	남해읍 망운로19번길 **				
69	남해읍	서변리	490-30	대	7	7	기획재정부					
70	남해읍	서변리	490-31	대	12	12	정*심	남해읍 망운로21번길 **				
71	남해읍	서변리	490-34	도	567	567	기획재정부					

남해군 청사신축 편입부지 물건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건물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비고
									성명	주소			
1	남해읍	북변리	138-8	대	망운로9번길 4	건축물 1	블록조 스투브 및 스투브지붕	86.50㎡	이*엽 외 2		**은행	근저당권	
						건축물 2	철근콘크리트, 스투브	494.76㎡					
						지장물	물탱크 등	8종					
						수목		7주					
						영업 1	마***	1식	정**				
						영업 2	화***	1식	이**				
						영업 3	소***	1식	임**				
영업 4	은***	1식	김**										
2	남해읍	북변리	139-4	대	망운로9번길 2	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 스투브	406.46㎡	한*준 외 1				
						건축물 2	블록조 및 철파이프	49.45㎡					
						지장물	물탱크 등	4종					
						영업 1	CU***	1식	이**				
						영업 2	미***	1식	정**				
						영업 3	글***	1식	김**				
						영업 4	막***	1식	이**				
3	남해읍	서변리	18-5	대	망운로9번길 10	건축물	블록조 강판지붕	173.70㎡	이*자				
						지장물	대문 등	7종					
						수목		1주					
						영업 1	남**	1식	임**				
						영업 2	동**	1식	박**				
4	남해읍	서변리	20-4	대	망운로9번길 12-1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스투브	293.90㎡	구*업				
						지장물		6종					
						영업 1	유**	1식	유**				
						영업 2	태**	1식	하**				
						영업 3	고**	1식	심**				
5	남해읍	서변리	20-5	대	망운로9번길 14	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벽돌 스투브	288.50㎡	정*수				
						건축물 2	판넬조 판넬지붕	18.00㎡					
						지장물	물탱크 등	5종					
						영업 1	한**	1식	탁**				
						영업 2	화**	1식	박**				

남 해 군 공 보

(90)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건물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비고
									성명	주소			
6	남해읍	서변리	24-6	대	망운로19번길 15	건축물	일반철골조 강판지붕	79.40㎡	송*영		남해*** 협동조합	근저당권	
						지장물	테크 등	4종					
						수목		239주					
						영업 1	콩**	1식	고**				
					영업 2	컬**	1식	송*** 외 1명					
7	남해읍	서변리	25-2	대	망운로 17-5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	98.00㎡	김*희				
						지장물	물탱크 등	11종					
						수목		5주					
8	남해읍	서변리	25-3	대	망운로19번길 9	건축물(1층)	콘크리트 스라브	99.56㎡	공*성				
						건축물(2층)	경량철골조 성글지붕	58.74㎡					
						건축물(기타)	파이프조 썬라이트 등	33.70㎡					
						지장물	물탱크 등	9종					
						수목		2주					
					영업	황**	1식	공**					
9	남해읍	서변리	25-4	대	망운로19번길 13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 등	105.33㎡	최*규				
						지장물	태양광 시설 등	12종					
10	남해읍	서변리 북변리	25-5 140-13	대	망운로 17	건축물 1	블록조 스라브	247.30㎡	이*호				
						건축물 2	벽돌조 스라브	41.70㎡					
						지장물	물탱크 등	20종					
						수목		29주					
						영업 1	옥**	1식	이**				
						영업 2	B**	1식	박**				
	영업 3	쭈**	1식	전**									
11	남해읍	서변리	25-7	대	망운로19번길 7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00.50㎡	이*석				
						지장물	물탱크 등	5종					
						수목		3주					
					영업	푸**	1식	최**					
12	남해읍	서변리	26-1 490-30	대	망운로19번길 1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58.05㎡	이*호		*** 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지장물	옥탑화장실	1종					
						영업 1	L**	1식	이**				
					영업 2	남**	1식	김**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건물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비고
									성명	주소			
13	남해읍	서변리	26-8 490-31	대	망운로19번길 3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	97.20㎡	정*심				
						지장물	물탱크	1종					
						영업	서**	1식	장**				
14	남해읍	서변리	28-1 26-20	대	망운로19번길 17	축물(1층)	경량철골조 등	91.45㎡	송*영		남해*** 협동조 합	근저당권	
						건축물(2 층)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46.61㎡					
						물(기타)	철골조 판넬지붕 등	42.80㎡					
						지장물	담장 등	3종					
						수목		1주					
						영업 1	송**	1식	송**				
영업 2	맹**	1식	고**										
15	남해읍	서변리	28-2 26-7 26-18	대	망운로19번길 19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	83.14㎡	이*애		남해** 협동조 합	근저당권	
						지장물	물탱크 등	9종					
16	남해읍	서변리	28-3	대	망운로19번길 23	건축물	벽돌조 기와지붕 등	108.00㎡	고*숙				
						지장물	물탱크 등	12종					
						수목		2주					
17	남해읍	서변리	28-4	대	망운로19번길 25	건축물	경량철골조 형글지붕	110.00㎡	박*문		***은행	근저당권	
						지장물	대문 등	6종					
						수목		1주					
18	남해읍	서변리	29-1	대		지장물	담장	2종	김*표				
						수목		1주					
19	남해읍	서변리	29-2	대	망운로9번길 14-16	건축물	벽돌조 슬라브	97.50㎡	김*근				
						건축물 (기타)	판넬조 판넬지붕	6.00㎡					
						지장물	태양광 등	14종					
						수목		30주					
20	남해읍 남해읍	서변리	29-3 29-4 24-14	대	망운로9번길 14-20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148.70㎡	김*범				
						건축물 (기타)	블록조 / 새시조	19.20㎡					
						지장물	태양광 등	16종					
						수목		8주					
21	남해읍	서변리	29-5	대	망운로9번길 14-22	건축물	경량철골조 형글지붕	72.80㎡	김*자		남해** 협동조 합	근저당권	
						지장물	담장 등	3종					

남 해 군 공 보

(92)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건물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비고
									성명	주소			
22	남해읍	서변리	30	대	망운로9번길 14-10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스투브	219.92㎡	조*산		남해** 협동조 합	근저당권	
						지장물	화단 등	10종					
						수목		19주					
						영업 1	금**	1식		조**			
						영업 2	남**	1식		김**			
						영업 3	세**	1식		이**			
23	남해읍	서변리	31	대	망운로9번길 14-8	건축물 1	철근콘크리트 스투브	244.70㎡	고*훈				
						건축물 2	블록조 스투브	33.60㎡					
						지장물	태양광 등	9종					
						영업	도**	1식		박**			
24	남해읍	서변리	33-2	대	망운로9번길 14-18	건축물	벽돌조 스투브지붕	109.74㎡	김*애				
						건축물(기 타)	블록조 스투브/새시조	22.50㎡					
						지장물	물탱크 등	11종					
						수목		2주					
25	남해읍	서변리	34-1	대	망운로9번길 14-17	건축물	블럭조스레트지붕	50.50㎡	이*목		진주*** * 협동조 합	근저당권	
						축물(기타)	블럭조스라브지붕	28.00㎡					
						지장물	대문 등	5종					
						수목		1주					
26	남해읍	서변리	34-2	대	망운로9번길 14-15	건축물	목조스레트지붕	65.70㎡	임*숙 외 1				
						건축물(기 타)	블럭조스레트지붕 등	39.50㎡					
						지장물	물탱크 등	6종					
						수목		1주					
27	남해읍	서변리	35	대	망운로9번길 14-13	건축물	블록 및 목조 스투트	49.20㎡	조*자				
						건축물(기 타)	블럭조 스투브지붕	13.10㎡					
						지장물		5종					
28	남해읍	서변리	36-1	대	망운로9번길 14-11	건축물	블록조 목조지붕	59.40㎡	정*자				
						건축물(기 타)	블록조 스투브지붕	15.40㎡					
						지장물	물탱크 등	7종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건물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비고
									성명	주소			
29	남해읍	서변리	37-2	대	화전로59번 길 18-7	건축물	벽돌조스라브지붕	117.40㎡	김*수		남해** 협동조 합	근저당권	
						지장물		10종					
30	남해읍	서변리	37-3	대	화전로59번 길 16-3	건축물	벽돌조스라브지붕	87.38㎡	정*심		**은행	근저당권	
						지장물		7종					
31	남해읍	서변리	38	대	화전로59번 길 18-5	건축물	벽돌조스라브지붕	82.10㎡	김*순				
						지장물	수도전 등	12종					
						수목		2주					
32	남해읍	서변리	39-1	대	망운로9번길 14-19	건축물	벽돌조스라브지붕	179.80㎡	박*나		**** 농업 협동조 합	근저당권	
						지장물	태양광 등	10종					
33	남해읍	서변리	39-9	대	망운로19번길 31-2	건축물	목조 및 블록조 강판	37.80㎡	송*심				
						지장물		11종					
						수목		7주					
34	남해읍	서변리	41-6	대		지장물	바닥포장	1종	박*숙				
35	남해읍	서변리	44	대	화전로59번길 16	건축물	벽돌조스라브지붕	142.90㎡	임*주				
						건축물(기 타)	블럭조판넬지붕	12.20㎡					
						지장물		8종					
						수목		2주					
36	남해읍	서변리	46	대	화전로59번길 14	건축물	경량철골조판넬지붕	27.00㎡	김*철		** 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지장물		2종					
						영업	예**	1식	김**				
37	남해읍	서변리	47	대	화전로59번길 16-4	건축물 1	목조및블럭강판지붕	59.70㎡	최*울		남해** 협동조 합	근저당권	
						건축물 2	블럭조스라브지붕	56.70㎡					
						건축물 3	블럭조스레트지붕	19.50㎡					
						지장물	물탱크 등	10종					
						수목		4주					
38	남해읍	서변리	49-1	대	망운로9번길 14-5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107.80㎡	류*춘				
						건축물(기 타)	블럭조 스라브지붕	14.90㎡					
						지장물	물탱크 등	5종					

남 해 군 공 보

(94) 제 662 호

2020년 4월 28일

연 번	소재지		지번	지목	건물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권리 종류	비고
									성명	주소			
39	남해읍	서변리	49-2	대	망운로9번길 14-7	건축물 1	일반철골조스라브지붕	88.44㎡	김*훈		남해군 *** 협동조 합	근저당권	
						건축물 2	벽돌조 강판지붕	155.58㎡					
						지장물	물탱크 등	5종					
						영업	원**	1식	김**				
40	남해읍	서변리	50-1	대	화전로59번길 12	건축물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301.98㎡	최*				
						지장물	화단 등	6종					
						수목		6주					
						영업 1	장**	1식	장**				
					영업 2	브**	1식	최**					
41	남해읍	서변리	51	대	망운로9번길 18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68.20㎡	정*균				
						지장물	물탱크 등	5종					
						수목		2주					
42	남해읍	서변리	52	대	망운로9번길 14-1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150.80㎡	윤*수		** 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건축물(기 타)	블럭조 스라브 및 스텝트	36.80㎡					
						지장물	물탱크 등	6종					
						영업	금**	1식	김**				
43	남해읍	서변리	53-1	대	망운로9번길 16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103.00㎡	김*태		*** 새마을 금고	근저당권	
						건축물(기 타)	블럭조 스라브지붕	23.30㎡					
						지장물	물탱크 등	5종					
						영업	남**	1식	김**				
44	남해읍	서변리	65-2	대	망운로19번길 31-1	건축물	블럭조 스라브지붕	133.40㎡	정*순				
						지장물	물탱크 등	15식					
						수목		2주					
45	남해읍	서변리	65-3	대	망운로19번길 31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88.56㎡	이*석				
						지장물	물탱크	1종					
46	남해읍	서변리	65-4	대	망운로19번길 33	건축물	벽돌조 스라브지붕	144.30㎡	윤*숙				
						지장물	물탱크 등	14식					
						수목		34주					

남해군 공고 제2020 - 564호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17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청사신축 계획에 따른 청사건립 적립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규칙 명칭 변경을 적용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적립금 중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입·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안 제2조 및 안 제3조)

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 규칙 명칭(제명) 변경 (안 제4호)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5월 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88,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청사신축팀(전화 055-860-318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3.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제4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세입) 남해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일반회계의 전입금(매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p> <p>2. (생 략)</p> <p><신 설></p> <p>3. (생 략)</p> <p>제3조(세출) (생 략)</p> <p><신 설></p> <p>제4조(회계공무원)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관직 지정은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p>	<p>제2조(세입) ----- ----- -----</p> <p>1. 일반회계의 전입금</p> <p>2. (현행과 같음)</p> <p>3.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3조(세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p> <p>제4조(회계공무원) ----- -----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p>

남해군 공고 제2020 - 565호

화계 전원마을 분양 공고

농어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남해군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한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에 대한 분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0일

남 해 군 수

1. 마을명칭 : 화계 전원마을
2. 위 치 : 경남 남해군 이동면 화계리 398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4. 분양내역

용 도	필지수	총면적 (㎡)	필지별 (㎡)	평균분양 가격 (원/평)	분양방법	분양신청 및 대상자 선정	위치선정	계 약
주택용지	22	12,826.6	480~760	948,000	접수 및 추첨	2020.4.20.~2020.6.19.	2020. 6월중 (별도 통보)	2020. 7월중 (별도 통보)

※ 분양가격은 평균가격이며 필지별 분양가격이 다르므로 분양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분양대금의 납부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비 고
금 액	15,000천원	분양예정가 50%	분양예정가 50%에서 계약금을 뺀 금액	
납부시기	계약서 작성 후 (고지서발부)	계약 후 7개월 이내	건축완료 후 소유권 이전登記 전 납부	

6. 분양신청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지역개발팀

7. 분양신청자격 및 순위

- 제1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당해사업이 시행된 화계리 마을주민(향우포함) 및 농촌거주 희망도시민 세대주
 - 제2순위 : 분양공고일 현재 당해사업이 시행된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거주 세대주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 ※ 1세대주 1필지를 초과할 수 없음

8. 필지별 분양계획 : 순위별 원하는 필지 작성 (동일필지 선정 시 추첨)

9. 분양신청서 제출서류

○ 분양신청

- 분양신청서(첨부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분양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함)
- 가족관계등록부 1부(화계향우에 한함)
- 신청자 인감증명서 일반용 1부(대리신청의 경우에 한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의 복사본 1부

○ 위치선정 : 2020. 6월중 별도통보

○ 위치선정시 필요사항 : 분양계획서 참고

10. 분양추첨 및 계약체결 불이행시의 조치 : 분양신청자가 추첨에 불응하거나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양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분양신청 및 가격, 추첨, 계약체결 및 계약취소, 사용예정시기, 주택건축, 입주 예정일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남해군 지역활성과 지역개발팀에 비치되어있는 화계 전원마을 주택용지 분양계획서 및 화계 전원마을 건축설계·시공 지침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남해군청 지역활성과 지역개발팀 (☎ 860-3612~3613)

남해군 공고 제2020 - 591호

분묘개장공고(1차)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염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편입 토지내 분묘를 개장하고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아래 신고처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남 해 군 수

1. 분묘소재지

- 소재지 : 경남 남해군 서면 남상리 1680-2, 1680-23 일원, 1기

2. 개장사유 : 염해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3.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무연분묘 안치 : 경남 남해군 남해추모누리 봉안당/봉안 후 10년간 안치

4. 공고기간 : 1차 공고일로부터 40일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이장)처리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6. 공고인 연락처

- 공고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수

- 연락처 : 055-860-3291(재난안전과 방재복구팀)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의 관계서류(제적등본, 족보,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로 신고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개장하겠습니다.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거나 누락된 분묘 또는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같음합니다.

남해군 공고 제2020-595호

남해군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남해군이 2019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제 목 : 2019년도 남해군 행정예고 실시현황
-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① 총 건수	② 예고 대상				③ 예고 매체 (중복 표기)				④ 예고 기간	
	고시	훈령	예규	기타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기타	20일 이상	20일 미만
317	180	3	2	132	214	297	27	195	185	132

<작성 방법>

- ① 총 건수는 2019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 ② 예고대상 : 고시, 훈령, 예규, 기타로 분류하며,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
 - 고시 :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형식
 -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한 것
 - 기타 :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정책, 제도, 계획 등을 말함
- * 규정, 규칙,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감안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
- ③ 예고매체 :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를 준용하여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
- ④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함

2020. 4. 28.

남 해 군 수